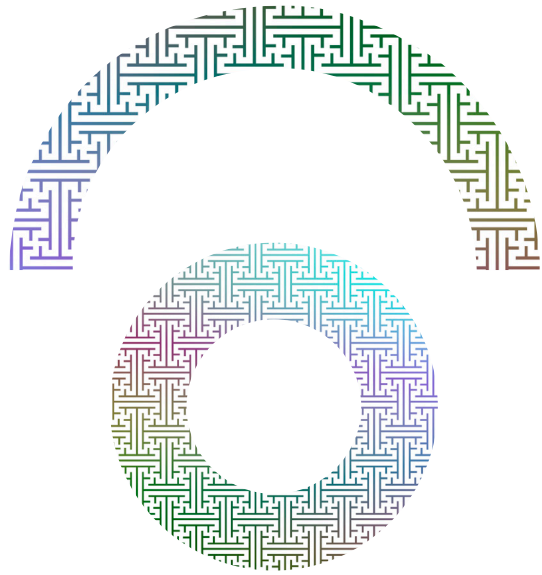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방안 검토 연구



연구진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의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교육 인프라 취약
 - 경북은 면적 넓고 원전, 국가공단 등 국가중요시설 위치, 안보 및 재난위기 상존
 - 이에 경북은 재난안전 취약 계층들인 노인대상 산불·농기계·교통 등 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안전교육·훈련 강화,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 예방 피해비용 감소
 - 2014년 경북 : 안전사고 20,278건(사망 658명, 재산피해 231억원)
- 이에 정부가 2016년 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됨
 - 경상북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현재 분산된 경북의 안전문화 기능 사업 통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 수준의 안전문화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사업의 통합 지원, 재난 및 안전유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통합적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경북 도내에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훈련 기관 및 유사 공공조직, 교육훈련 운영체제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연구사항으로는 먼저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체계 및 유관기관의 조직 운영 마련, 관련 행·재정 지원 방안 등 검토

- 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및 유사 기구 등의 사례연구를 통한 안전문화 발전방안 제안
- 경북 도내의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운영체계 및 조직 구축안 마련 등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 기구설립을 위한 법적 타당성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등 연구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에 적정한 기구유형 제안
 - 조직 설립의 유형(지방공기업 유형, 독립법인 유형;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연구
 - 재단 설립에 관한 소요비용, 조직 및 인력운영의 활용 범위 검토
- 기관 신설에 따른 도의 출연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 범위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분석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설립 및 사업운영 역할 필요성

- 경북도 내에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안전체험시설 등의 확충 전파가 필요한 상황임
 - 전국적 상황을 보면, 학령인구수(3-7세, 약 752만명) 대비 체험시설 부족으로 체험안전교육 사각지대 발생, 안전체험시설은 2015년 10월 기준 전국 164개소, 추가 건립 예정 9개소가 있음

□ 안전경북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 경북 도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과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를 설립가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상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 보급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 시 역할(대상사업)을 제시한 근거법령
 - 2016년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취지 및 동법의 제4조 이하 13조 및 제14조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필요한 연구 및 개발 보급 등을 이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게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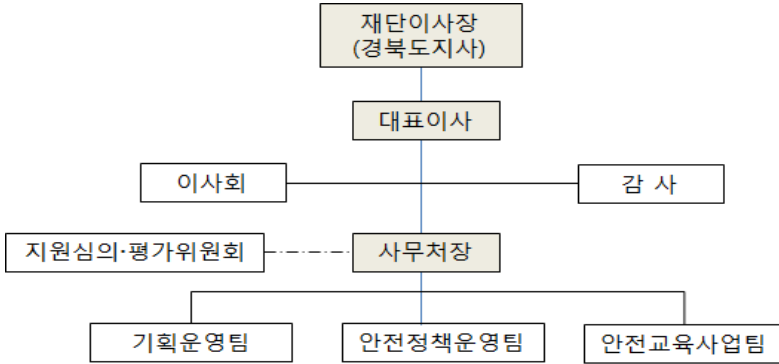
□ 안전문화재단(가칭)의 설립·운영 시 주요 기능 및 역할

-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정책의 주관기관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
- 재난안전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주요시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역할 수행 및 재난안전 분야의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및 양성교육 시행
- 재난안전에 대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체계 모니터링
- 재난안전 분야의 산업화 방안 연구 및 기술적 발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추진체계 역할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조직 구성(안)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이 설립 운영될 경우 약 20명의 조직으로 출범
 - 기준인건비제의 정원관리 방식을 고려해 볼 때, 경북도는 그 재정력이 ‘중’ 수준의 그룹에 속하므로 2% 수준에서의 인력확대 탄력성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장 시도의 기구 중에서 제9~11조 근거에 따라 ‘시도의 기구설치 기준’ 및 ‘시도의 실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도 고려해서 인력 구성을 할 수 있음

<그림> 1차 3개부서(팀)의 규모로 15~20명 출범인력 수준 및 조직(안)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발전 방안

- 재단의 조직·인력운영의 적절성 검토는 초기 설립 시에는 일단 조직구성(안)을 검토하여 초기인력의 소요범위를 정하게 되지만, 사업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서 또 운영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증가하게 됨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이 수행할 대행사업 등의 예산지원 범위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7조에 근거하면,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재정운영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이 대행하게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그 지원 범위는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등에 한정하고 있음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시 법률적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법령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 필요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사업비 부담 범위 확정(동조례 제7조),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 및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동조례 제6조 및 제10조), 지도·감독(동조례 제8조)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운영에 적용해야 할 것임

차 례

제1장 서론	1
1. 과제 개요	3
2. 과제의 연구내용	4
3. 과제의 연구방법	5
제2장 안전문화운동 진흥의 의의 및 현 실태 분석 ...	7
1.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9
2.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	13
3.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안전문화(진흥)재단의 필요성	20
제3장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연구를 위한 유사사례 분석	27
1. 유사사례 분석의 필요성	29
2.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단체 현황	30
3.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별 운영 사례 분석	38
4.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별 현황 비교	64
5. 타 시·도 안전재단 현황	65



제4장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77

- 1. 안전문화운동 추진기관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79
- 2. 선행연구 분석으로 본 추진기구 설치·운영
 기본방향 87
- 3.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여건 및 근거 97
- 4.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안) 105

제5장 결론 113

- 1.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 115
- 2.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근거 및 핵심기능 116
- 3. 경북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18

【참고문헌】 121



표 차례

<표 2-1> 안전관리대책의 관련분야 및 주관기관	10
<표 2-2> 안전문화 주요 영역별 활동	12
<표 3-1> 2012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기본현황	31
<표 3-2> 2012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기능별 구분	33
<표 3-3> 2012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설립근거 및 관련 법령	33
<표 3-4> 2011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예산 및 자체수입비율	36
<표 3-5> 2016년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임원 현황	40
<표 3-6>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41
<표 3-7>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의 2015년 경영평가 결과	42
<표 3-8> 2015년 수입·지출결산 총괄 - 운영비	43
<표 3-9> 2016년도 지출예산 총괄(조직·성질별)	44
<표 3-10> 2016년도 수입예산 총괄	45
<표 3-11> 도정목표 및 도 청소년정책과제에 따른 6대 전략목표 및 17개 전략과제	49
<표 3-12> 2014년도 세입액 및 세출액	51
<표 3-13>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인력현황	54
<표 3-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56
<표 3-1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57
<표 3-16> 2014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61
<표 3-17> 2016년도 예산서: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62

<표 3-18> 2016년도 예산서:
 자금운영계획 - 지출자금 63

<표 3-19> 경상북도 내 재단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현황 비교 64

<표 3-20> 2015년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업실적 69

<표 4-1>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의 차이 88

<표 4-2> 재난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91

<표 4-3> 재난안전기본법 제71조 93

<표 4-4> 원유철의원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2015년 94

<표 4-5>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101

<표 4-6> 경북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요인 104

<표 4-7>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06

<표 4-8> 경북도의 안전교육과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 108

<표 4-9> 경기도의 2015년 기준 주요분야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현황 110

<표 4-10> 경북도내 기관 인력 비교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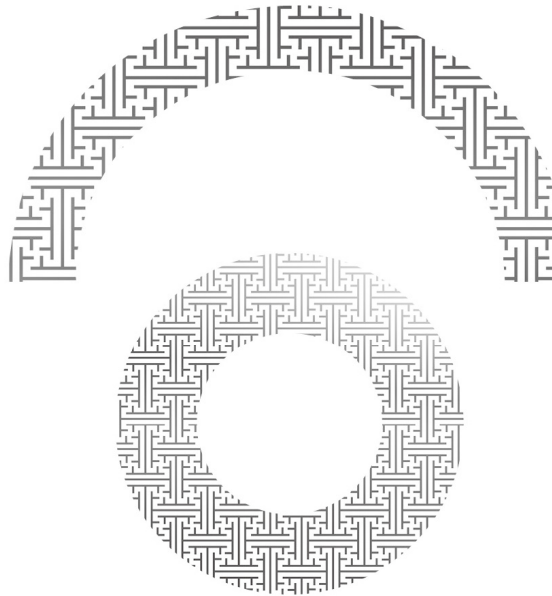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2016년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의 조직도	17
<그림 3-1> 2016년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조직도	40
<그림 3-2>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조직도	50
<그림 3-3>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미션과 비전	52
<그림 3-4> 한국국학진흥원 조직도	54
<그림 3-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목적	58
<그림 3-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비전	59
<그림 3-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직도	61
<그림 3-8> 2017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조직도	70
<그림 3-9> 2015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수입 및 지출	71
<그림 3-10> 2016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수입 및 지출	72
<그림 4-1> 안전문화진흥원 업무분장	82
<그림 4-2> 이종열 외(2010) 연구팀이 제안한 안전문화진흥원 조직도	83
<그림 4-3> 2012년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문화진흥원 구성도	84
<그림 4-4> 안전문화진흥위원회 조직도	85
<그림 4-5> 출범 조직(안)	111

제1장 서론

1. 과제 개요
2. 과제의 연구내용
3. 과제의 연구방법



제1장

서론

1. 과제 개요

가. 추진배경

○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경북 현황

- 경북은 면적 넓고 원전, 국가공단 등 국가중요시설 위치, 안보 및 재난위기 상존
- 안전교육·훈련 강화,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 예방 피해비용 감소
 - ※ 2014년 경북의 안전사고는 20,278건(사망 658명, 재산피해 231억원)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수요 급증(2→13만명)

○ 연구의 주요 목표

- 국민안전처의 권고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안전문화운동추진 지역협의회’ 운영
- 또한 정부는 개별 국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화 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를 통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전담, 도민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체계 및 생활안전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도민 재난대응 역량 제고, 365 안전한 경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을 주도할 경북도의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추진 필요
- 경북 도내에 다방면으로 분산된 안전문화 기능사업 및 관련기관들 간 통합체 구성으로 지속적인 국민안전문화 정착, 안전문화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력 제고

나. 연구과제의 필요성

○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진흥과 이를 뒷받침할 기구의 설립 필요

- 국가는 지난 2015년 7월 법률 제1344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고, 2016년 1월 25일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됨(동법 제3조의 1)

- 이후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이 법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 이법의 기본 취지는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원한다고 하였음
- 이에 경북의 관련기구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 담당이 필요하기 때문임
-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현재 분산된 안전문화 기능 사업의 통합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도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 수준의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부서의 재난 및 안전유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기구를 통해 그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2. 과제의 연구내용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 설립취지의 적절성, 주요 역할과 기능 및 사업운영 가능성 등 검토
 - 유사 중복 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 연구
 - 기관 신설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의 충족 여부 등 검토
- 기구설립을 위한 법적 타당성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등 연구
 - 도민의 안전교육 훈련계획에 포함될 도민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 도민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십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방안, 도민안전의식 선진화 실행을 위한 기존의 관계법령 검토 및 새 근거법령(안) 마련 제시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에 적정한 기구유형 제안
 - 조직 설립의 유형(지방공기업 유형, 독립법인 유형;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연구
 - 도의 재정운영 및 지원 또는 사업성 추진에 따른 설립형태 연구 등
- 재단 설립에 관한 소요비용, 조직 및 인력운영의 활용 범위 검토
 - 기관 신설에 따른 도의 출연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 범위
 - 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예: 1차-실 3팀 : 25~30명 정도)
 -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충족 여부 제안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분석
 - 재단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할 경우 도 차원에서 재정적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이 가능한지 등 재정운영의 적정성 예상
 - (민간 경영참여 곤란성,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 촉진, 환경 훼손 여부 등 같은) 공공성 기준에 적합한 사업성 유지가 가능한지 검토

3. 과제의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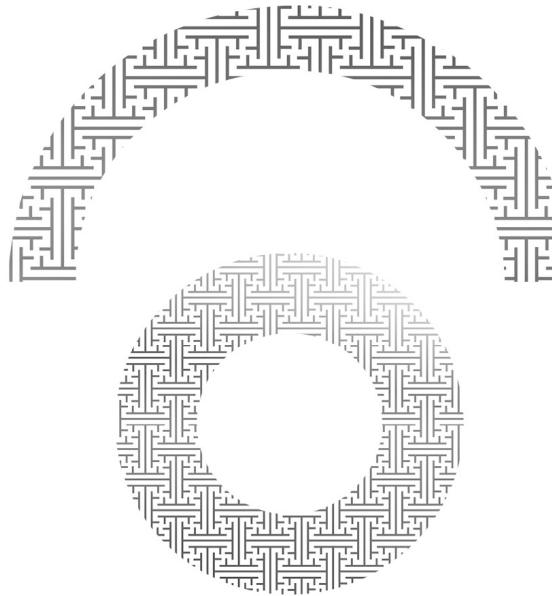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 현재까지 국내적으로 안전문화 관련 활동에 관한 연구, 법,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문헌·자료 조사 (2013년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연구’에 기초)
 - 2016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의 안전문화 교육·홍보 및 안전문화 활동 등 관련 문헌연구, 선행연구, 정부자료집, 경상북도의 관련문헌 등을 검토
- 관련 전문가와 워크숍 및 현지 조사 등에 따른 대안 검토
 - 경상북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필요시 현지조사 등 근거자료 수집
 - 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에 적정한 기구유형 제안

- 안전문화 활동 및 교육 등에 관한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추진체계 설계 방안 도출
 - 이와 관련하여 경북 도내 유사 출자 및 출연기관, 유사 재단 등의 운영체계 및 조직, 인력규모 등 분석 후 대안에 참조
 -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유사기관 등에 관한 법체계 및 기능과 역할, 관련 행·재정 지원 방안 등 검토
 - 중앙 및 지역에서 시행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와 유사한 기구 등 사례연구를 통한 안문협의 발전방안 제안

제2장

안전문화운동 진흥의 의의 및 현 실태 분석

1.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2.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
3.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안전문화(진흥)재단의 필요성



제2장

안전문화운동 진흥의 의의 및 현 실태 분석

1.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¹⁾

가.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의 개념

○ ‘안전문화’의 시작

-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국제 원자력 안전자문단(INSAG)』이 ’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보고서에 처음 사용
- 일반적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문화 진흥의 배경

-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내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이 이러한 대형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난관리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의식을 생활화·체질화시켜 국민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안전문화활동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안전문화에 관한 개념

- ‘안전문화’란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 가치관, 환경, 체계 등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산물 (2010년 국민생활안전에관한법

1) 본 내용은 과거 연구자들이 2013년 제안한 정책연구보고서,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연구’(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내용들과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 기존내용 및 당시 현황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불안, 제2조)

- 안전문화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 모두가 준수되는 것을 의미 (김근영, 2012: 13)2)

○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노력: 재난안전기본법상 안전문화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

○ ‘안전문화활동(운동)’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그리고 실무적으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분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관련되어 있음

<표 2-1> 안전관리대책의 관련분야 및 주관기관

관련분야	주관기관
보행자 안전	안전행정부
승강기 안전	안전행정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안전행정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사회복지시설 안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교육시설 안전	교육부
유도선 안전	소방방재청
자전거 이용 안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시설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등산사고 안전	산림청
수상레저 안전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재 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	안전행정부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및 국회예산정책처(2010)

2) 참조: 안전문화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 (박계형,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2011).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소관부처별 안전분야를 검토하면 알 수 있음
- 안전관리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 (정의)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운동)을 말한다.”로 규정

나.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활동의 분야 및 내용

○ 재난안전기본법상 ‘안전문화활동(운동)’ 분야

- 안전문화활동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 및 시책(법 제66조의2)에 명기됨
-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등임

○ 안전문화활동의 기본 분야

- 김근영 교수(김근영, 2012)는 관련 법령의 검토 분석을 통하여 실제 안전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개별법으로부터 안전문화운동(활동)의 주요 분야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 즉, 안전의 문제가 중요해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제도개선 사항 등이 활동대상임. 즉, 학교 안전문화, 다중이용시설 안전문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안전문화 분야 등으로 이들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부처가 분야별 안전에 관한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음

<표 2-2> 안전문화 주요 영역별 활동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생활안전 문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선
	SOS 국민안심서비스
	승강기 안전관리
	안전모니터 자원봉사단체

출처: 김근영, 2012: 34~43

○ 학교 안전문화의 실태³⁾

- 학교 안전문화 제도개선에 있어서 현 실태는 취약 아동 연령의 안전사고 다발장소가 학교로서 심각성이 확인되었음
-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안전사고는 줄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였음
-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에 안전사고의 80%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임
- 학교 안전문화의 문제점은 국가차원의 표준 안전교육 지침 미비, 청소년 안전교육 체험시설 부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자재 보급 미흡,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또 다른 미비점으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
- 개선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의 실태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위험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화재발

3) 이하 (김근영, 2012: 34~43)의 내용을 정리 요약.

생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2천 8백억 규모임. 사회적 피해 비용은 약 1조 5천 600백억 원에 이룸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설정기준의 미흡함. 예를 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고, 다중이용업소의 공통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상 다중이용업소의 관리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다수 지적됨
- 또한 다중이용업 안전교육 및 시설 특성에 따른 문제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교육 부재, 자율방화관리체계 취약, 내부구조 또는 업주 변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불가능, 실내 구조 및 운용 특성에 따른 위험도 증가 등이 나타남
- 더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조차 없어서 그 심각성이 큼
- 개선안으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화의 실태

- 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현황 정보 및 통계가 미흡하고, 사회복지법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조차 없어서 그 심각성도 만연되어 있음
- 개선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

가.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체계화 추진

○ 그간의 추진 경위

- '95.2 국무총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5.5 국무총리 주재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개최
- '96.1 대통령 정책과제로 “안전문화 확립” 추진 지시

- '96.4 제1차 “안전점검의 날” 시행(매월 4일)
- '95.5 국무총리 주재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개최
- '0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시 “안전문화” 관련사항 반영: 안전 점검의 날(제6조), 안전관리헌장(제7조),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제70조)
-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은 안전문화 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재난과 관련된 안전 위해요소의 신고·제보 등의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별 지원활동, 그 밖에 안전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을 추진해 왔음

○ 안전문화 관리기관의 체계화 필요성 대두

- 2000년대 후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 경제활동 저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생활 안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렴하여 부처별,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반 조성 및 안전문화를 진흥하고자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음
-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함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함. 이러한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발전을 통해 안전문화 세계 강국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유사 재난 및 안전관련 업무와 인력 및 물질 자원을 “안전문화(활동)”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념으로 결집시켜 국가적 힘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일부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과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부 노력해 왔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임(이종열 외, 2010: 215)
- 이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의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 설립과 운영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2010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

- 2010년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 제안하였던 안전문화진흥원설립 관련법(안)에서 제6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도자 육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바 있음
- 동 법(안)에서 특히 안전문화진흥 등 각종 사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 당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여 국가의 정책목표로서 안전문화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성격상 민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의 형태를 띠고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나. 박근혜 정부의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정책 추진

○ 박근혜 정부의 안전문화 정책기조

-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지를 반영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 위해서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
- 이후 안전행정부는 2013년 5월 30일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 여기에는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서부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전략 등을 제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그 해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 운영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됨
-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특징은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이던 국민안전의 중점관리 분야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 국민안전 종합대책

- 국민안전 종합대책과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6대 중

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음

- 4대 전략은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 선진제도 도입, 재난·안전 R&D 기반 강화 등 인프라 확충,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확대 등임

○ 안전대책에 대한 감축목표 관리제 실시

- 안전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정책. 안전관리 지표는 사고·범죄 예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선정하되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발생 또는 입건 건수 등)는 지양하도록 하였음

○ 안전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안전처의 역할: 안전문화의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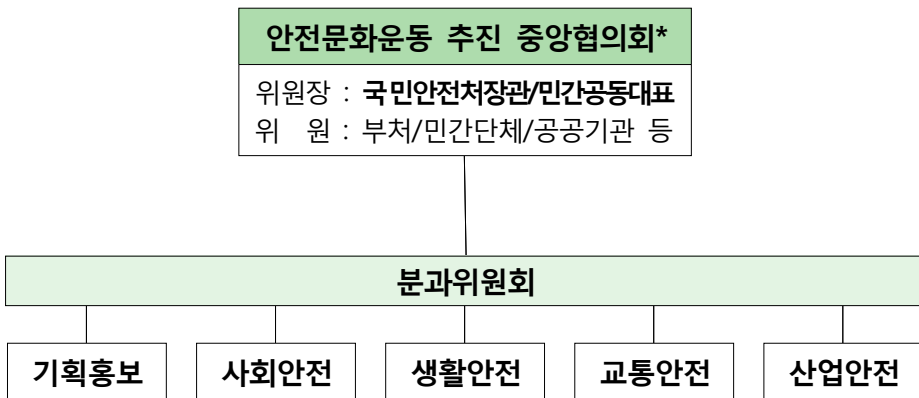
- 지금까지 개별 소관분야별 안전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과 더불어 이 부처에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안전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
- 특히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함
- 이에 국민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2013년 5월 30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
-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로 4대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했고, 또 지역단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와 시군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에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다. 안전문화활동 추진체계의 구성, 개편 및 활동 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중앙협의회 발족(2013년) 및 운영(2013~2016년)

- 2013년 5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80여 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를 출범했음
-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는 사회 안전, 생활·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주요 목표는 지역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음. 이러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서 협의회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 대책 수립과 실천을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 가는데 노력함

<그림 2-1> 2016년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의 조직도



* 위원장 2명(국민안전처장관, 민간위원장 송사) / 위원 94명(중앙부처 12, 민간단체 51, 공공기관 14, 시도 부단체장 17)

- 안전문화운동 추진중앙협의회의 주요 활동
 -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2013. 7.4, 코엑스): 기초강연, 안전문화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
 - 안문협 분과별 실천과제 홍보캠페인 등 전개: 대중교통 종사자 간담회, 스쿨존 30km/h 서행(7월), 우리아이 스마트폰 안전 사용, 심폐소생술 직장교육(8월), 산업안전수칙 준수, 재난안전 캠페인, 보행 교통안전 증진 세미나(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중앙 안문협) 송자 민간위원장 및 17개 시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 안문협) 민간위원장들과 간담회 개최(10월 25일)
 - 안전문화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2월 17일 KINTEX에서 ‘2013 안문협 전국대회 및 안전문화대상’을 개최
- 중앙협의회 구성 후 각 시도 단위에서도 도지사 및 광역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도별 및 시군구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부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 (2013년 9월 4일) 출범
 - 허남식 부산시장과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안전관련 지방청장인 지방경찰청장 소방안전본부장 지방식약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시민단체 대표 및 안전관련 기관장 등 58명으로 구성. 민간 행정 언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 등 논의를 통한 지역맞춤형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 활동
 -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이하 안문협)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2013년 11월 13일 부산시청)
- 인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시협의회
 - 안전문화운동 실천 총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인천시는 2013년 11월 13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시 협의회’(공동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를 출범하였음
 - ‘시민안전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4대약 근절 등 안전사회 구현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관한 선제적·예방적·근원적 대책을 포함하는 안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외에도 6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어린이·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감축목표제 실시하기로 하고, 안전지수를 만들어 구체적인 발생률 등 감축목표제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키로 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추진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 8개 분야 25개 과제도 감축목표를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 산업 등 전 분야의 안전수칙, 잘못된 관행 발굴하여, 사회, 생활,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임
- 시민안전을 위한 일상생활 제도개선 <맞춤형 안전관리 특화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 특화시책을 적극 발굴, 도입할 방침

○ 시군단위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

- 서산시장과 유장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서산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39명의 위원으로 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산시협의회가 구성되었음 (2013년 8월 23일)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됨
- 구체적으로는 4대악 범죄 척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가정 및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안전캠페인: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계절별로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함

○ 2016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활동 방향

- 국민안전처는 2016년 7월 6일 안문협 활동을 위한 「2016년 하반기 안문협

총회 및 안전포럼」을 개최하였으며, 3년차의 안문협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조직체계를 개선하였고, 특히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안전정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안전부처로서 주요정책과제로 ‘공동체 기반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정하고 안전문화운동의 지역에서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민간주도로의 운영체계 전환을 추진하였음
- 3대 핵심 실천수단으로 ‘점검, 교육, 신고’를 정하고 이를 지역공동체에서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한 바 있음
- “(점검) 안전주간을 설정, 지역-직장·가정 등 주체별로 지역공동체 내 주기적 안전점검. (교육) 주민센터 등 공동체 내 각종 시설과 안전관련 강사 등 활용, 지역형 안전강좌 개설, (신고)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생활화 및 민관합동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소 처리 및 사고예방” 등으로 확정하고 추진함

3.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안전문화(진흥)재단의 필요성

가.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특히 안전문화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학교 안전문화와 관련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통합적 운영의 체계화가 요구됨

○ 안전문화와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

- 재난안전기본법 상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안전문화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고, 동법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평가시 안전문화에 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문화 관련 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문화에 관한 평가체계를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진단 혹은 안전지수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컨설팅 하는 시책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의식, 안정성 지수 등에 관한 자료수집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주체가 필요함
- 어린이 안전의 경우에 교육부, 국민안전처 및 소방방재본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안전의 경우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연계하여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노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연계하여 안전문화를 증진하도록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 이렇게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분야별 및 소관부처들 간의 공동협력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함
-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프랑스 사례

○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관련 내용들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UN은 1992년부터 매년 10월 두 번째 수요일을 재난예방을 위한 국제 주일로 선포하고 시행해 왔음. 이를 기초로 해서 다른 선진국들도 실천에 옮기고 있음
- 예를 들면, 프랑스는 199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특별한 대응제도들을 시행해 왔음. 2004년 제정한 프랑스의 ‘시민안전 현대화법’의 제5조에도 “(프랑스의) 모든 청소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위기예방 및 안전, 재난구조 임무수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프랑스 정부는 2006년 1월 11일 정부시행령 2006-11호에 의하여 학교 내에서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령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음
- 프랑스 내무부 역시 2006년 5월 24일 행정회람으로 학교교육을 위한 시민안전 관련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안내해 오고 있음
- 프랑스의 교육부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재난위기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미 2002년 교육부 행정회람으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시행해 오고 있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시민안전 현대화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서, 학교의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재난안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책으로 ‘내부비상대비계획(POI)’을 세워두어야 하며, 이를 사고발생시 적용하여 긴급대처 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사전예방-대응-처리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승격시켜 관리하고 있음
- 그 결과 학교생활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재난정보의 발생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발령되는지 문답방식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또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 재난발생시 어떤 문건들을 참조해서 대처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재난대응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이수받고 있다고 할 것임

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인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의 제도적 보완 및 강화 필요

- 정부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전보다 더 활성화돼 민간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안전문화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려고 함

- 나아가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 주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의지도 있음
- (가칭) 안전문화(진흥)재단 또는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치의 필요성
 - 향후 2017년부터 본 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진흥)재단/안전문화교육진흥원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안전문화(진흥)재단/안전문화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의식 향상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역할 담당이 필요하기 때문임
 - 즉, 현재 다방면으로 분산된 안전문화 기능 사업의 통합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 수준의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타부처 산하의 재난 및 안전유관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과 전국적 배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지원해주는 기구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간 산재되어 있는 안전문화 업무의 통합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총괄업무를 지도할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가 중요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함
-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주체(안전문화재단/진흥원)의 설립 방향
 - 국민안전처를 대신하여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안전문화 사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총괄 조정하는 추진체계 확보가 필요함
 -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안전문화진흥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고려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효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

의 설립 운영을 제도화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총괄 조정 역할의 적시는 물론 자체적 예산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제도개선은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실무위원회의 업무나 권한이 명확하여야 함. 안전문화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갖춰져야 함
 - 추진체계는 ‘재난안전기본법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범주 안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법 등 강구가 요구되지만 2010년과 같이 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수법인 설립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진흥)재단/안전문화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 및 위기관리를 위한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미국은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해 안전문화의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주체가 형성되어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기능들이 국민안전처, 내부의 소방방재본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산재되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화 확산과 의식고취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핵심추진체계의 부재로 갈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로잡고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핵심 추진주체가 필요한 것임
 - 앞으로 더 바라는 것은,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전관련 공무원, 교육자 및 일반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서 이러한 독립기관을 통해 안전문화와 의식 등의 육성 발전과 안전문화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도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어느 곳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동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교육자, 재난대응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뭉쳐 전문적·체계적

- 으로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하여 안전문화와 그 관련 산업과 기술력에 기반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 안전사회, 안전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 민간단체에 의한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필요
-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민간단체에 의한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이 자원봉사기관, 주민자치활동 및 체험관 시설 설치 등에 한정 되어 있는데 이외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하여 개인 및 그 외의 단체 등에 대한 육성 지원이 필요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 운영, 안전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민간단체의 안전문화 조사 지원)
-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한 경상북도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설립 필요성
- 이러한 취지에서 경상북도 역시 도내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및 교육인력을 확보하여, 도내 주민들에게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 및 도민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안전문화(진흥)재단’과 같은 추진체계의 설립·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다음 장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분야는 다르지만 활동 및 사업 형태적으로 유사한 기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함

제3장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연구를 위한 유사사례 분석

1. 유사사례 분석의 필요성
2.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단체 현황
3.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별
운영 사례 분석
4.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별 현황 비교
5. 타 시·도 안전재단 현황



제3장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연구를 위한 유사사례 분석

1. 유사사례 분석의 필요성

- 안전문화운동 관련 유사기관에 대한 사례분석 필요성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예방과 안전문화운동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에 있음⁴⁾
 - 경북 도내의 출자 및 출연기관, 단체 등의 기관운영 사례를 검토하면 향후 경북 도내에 설립이 필요한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기능)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경상북도 출연 공공단체 및 기관에 관한 운영 현황 분석
 - 경상북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경상북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사 공공기관들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함
 - 경북도의회에서는 2015년 01월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음⁵⁾
 - 2016년 기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27개 기관 중 안전문화재단과 중복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전교육, 문화운동 등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4) 포항시 건설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장 황성기. 2015.10.01. 포항시 안전문화진흥 조례안. (검색일자: 2016.10.09.) http://council.pohang.go.kr/_Lib/modulestxt/XNMDownload.php?board=resolution&aid=1266&fid=006784c869aea4921859e60446926a70:67476

5) 경북신문. 2015.01.28.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너무 많아” -도정사업 업무보고회에서 문제점 지적-. (검색일자: 2016.10.09.) http://www.kbsm.net/default/area_index_view_page.php?part_idx=25&idx=118368

2.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단체 현황

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성격 및 주요 기능⁶⁾

- 경북도가 출연 및 설립한 기관단체의 성격
 -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는 도의 공공기관이며,
 -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경영혁신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산하기관·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경상북도 도지사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지정조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립하고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기관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일정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이와 같은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들로서, ‘정부에 의하여 설립, 지원되었거나 혹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에 따라서 경북의 공공기관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 초과 기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경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출연 및 설립 기관단체(2012년 기준)
 - 김광석(2012) 분류에 의하면, 경북도의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는 설립목적, 인력 규모와 설립시기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22개 기관으로, 그 소재지 별로 구분하면 다음

6) 이하 <김광석. 2012.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대구 경북연구원.> 참조.

과 같음. 즉, 테크노 파크 및 7개 기관·단체가 경상시에 소재하고, 구미시 5개, 안동시 3개, 영천시 2개, 경주, 김천, 울진에 각각 1개씩, 대구에는 2개(종합 자원봉사센터, 안용복재단) 기관이 소재

- 신용보증재단 등 12개 기관·단체는 2000년 이전에 설립되어 안정적 사업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기반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그린카부품진흥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복재단, 테크노파크, 안용복재단 가운데 테크노파크 등을 제외하면, 2012년 당시가 설립 초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정상화 상태가 아니었음

<표 3-1> 2012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기본현황

번호	기관명	현원(명)	설립유형	설립년월	소재
1	바이오산업연구원	18	출연기관	2004. 7	안동
2	신용보증재단	42	출연기관	2000. 3	구미
3	장학회	14	출연기관	1994.12	경산
4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17	출연기관	2005.11	울진
5	행복재단	14	출연기관	2011. 2	구미
6	경제진흥원	19	출연기관	1997.11	구미
7	교통연수원	11	출연기관	1991. 9	구미
8	문화재연구원	53	출연기관	1997.12	영천
9	생활체육회	7	보조기관	1991. 2	경산
10	여성정책개발원	11	출연기관	1997. 9	경산
11	장애인체육회	6	보조기관	2007. 4	경산
12	종합자원봉사센터	7	출연기관	2003.12	대구
13	청소년수련센터	17	출연기관	2002. 5	김천
14	청소년지원센터	12	출연기관	1997.12	안동
15	체육회	14	보조기관	1922. 7	경산
16	환경연수원	25	출연기관	2009.11	구미
17	문화엑스포	33	출연기관	1996.12	경주
18	한국국학진흥원	42	출연기관	1995.12	안동
19	테크노파크	29	출연기관	1998. 8	경산

번호	기관명	현원(명)	설립유형	설립년월	소재
20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7	출연기관	2007. 4	영천
21	그린카부품진흥원	7	출연기관	2010. 9	경산
22	안용복재단(독도재단)	6	출연기관	2009. 4	대구

출처: 김광석, 2012,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18p. <표 2-7> 기관·단체별 기본현황

○ 경북도 출연 및 설립 기관단체의 사업과 주요 기능

- 기관·단체별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에 따라 R&D, 체육진흥, 교육연수, 기업지원, 복지정책연구, 청소년복지, 문화R&D, 문화예술 기능으로 구분(김광석, 2012)
- 이들 기관을 기능 및 고객 유형 별로 분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문화·체육·복지 기능, 교육연수·연구개발 기능으로 구분됨
-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은 경북테크노파크 산하의 특화연구센터로 분야별 지역산업 및 관련 연구개발을 이행함
-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가 있음. 이들 세 기관 간에는 상공인과 기업인을 주요 고객으로 지원 분야 및 역할을 달리하고 있음
-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3개 단체임
- 청소년·복지 기능을 줄 담당하는 기관들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대학생 학숙(기숙사) 운영을 맡은 장학회 등이 있음
-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 지원기능을 담당하며 격년 개최하는 세계문화엑스포 및 엑스포공원의 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교육연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청소년수련센터, 교통연수원, 환경연수원 및 안용복재단이 있음. 청소년수련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교통연수원은 사업용차량 운전자와 일반인의 연수교육을 관리, 환경연수원은 환경 관련한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안용복재단은 청소년 대상의 독도 관련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함

- 행복재단과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 도내의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음

<표 3-2> 2012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기능별 구분

기능	기관단체명	기능	기관단체명
TP 특화센터	바이오산업연구원	기업지원	신용보증재단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제진흥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진흥원	복지정책연구	행복재단
체육회	체육회	청소년·복지	여성정책개발원
	생활체육회		장학회(학숙)
	장애인체육회		청소년지원센터
교육연수	청소년수련센터	문화R&D	종합자원봉사센터
	안용복재단(독도재단)		문화재단연구원
	교통연수원	문화예술	한국국학진흥원
	환경연수원		문화엑스포

출처: 김광석 2012,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p. <표 2-9> 기관단체별 기능별 구분

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설립 근거 및 법령

○ 설립근거 및 관련 법령

- 각 기관·단체에 따른 설립근거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2012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설립근거 및 관련 법령

연번	기관·단체명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소관 부서
1	바이오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산업발전법 제8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일자리경제본부
2	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3	경제진흥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투자유치본부

연번	기관·단체명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소관 부서
4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5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체육국
6	한국국학진흥원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7	문화엑스포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	
8	체육회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보조금지원)	
9	생활체육회	"	
10	장애인체육회	"	
11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동일)	환경해양산림국
12	환경연수원	재단법인경상북도환경연수원설립및지원조례	
13	여성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 및운영조례	보건복지여성국
14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15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16	행복재단	민법 제32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장학회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18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행정지원국
19	경북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20	하이드브리드부품 연구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동일)	일자리경제본부
21	그린카부품진흥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동일)	
22	안용복재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안용복재단설립및운영조례	환경해양산림국

출처: 김광석, 2012,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2p. <표 2-10> 기관·단체별 설립근거 및 관련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등에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들은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등 4개 특화센터임
- 체육분야의 3개 단체는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음
- 청소년수련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함
-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경제진흥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됨
-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환경연수원, 행복재단, 장학회 등은 경상북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됨(<표 3-3> 참조)

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예산 운영 현황

○ 2012년 기준으로 본 예산 현황

- 사업 및 기능별로도 각 기관의 예산 규모는 상당한 차이들이 있음(김광석, 2012)
- 2011년 기준해서 각 기관·단체별 예산규모를 비교하면 <표 3-4>와 같음. 즉, 100억원이 넘는 기관은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고,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기관들은 9개임. 이때 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연구원, 국학진흥원 등은 정부의 국비예산을 보조받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20~10억원 수준의 기관은 행복재단 등 5개였으며, 10억원 미만의 예산을 가진 기관들은 ‘안용복재단과 종합자원봉사센터’로 경북으로부터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이행하는 상태임

<표 3-4> 2011년도 경상북도 기관·단체별 예산 및 자체수입비율

(단위: 천원, %)

연번	기관·단체명	총세입	자체수입	자체수입 비율	비고 (주요 세입항목)	전기 이월금
1	바이오산업연구원	2,213,735	499,334	22.6%	운영사업세입기준/ 사업수입항목	612,401
2	교통연수원	1,468,654	133,654	9.1%	임대료수입/부담금수입등	-
3	경제진흥원	2,665,617	533,102	19.9	부대시설 수입(임대료 등)	733,676
4	신용보증재단	22,445,000	12,871,000	57.3%	보증료/예치금이자등 사업수익/총세입중자본 예산중 이월금제외	-
5	문화재연구원	9,631,023	9,531,023	99.0%	보조금 1억원 차감	-
6	한국국학진흥원	13,360,453	938,627	7.0%	이자/잡수입/출판판매/박 물관관람/임대/연구사업/ 기부금/문화회관운영	281,467
7	문화엑스포	38,923,584	2,055,742	5.3%	이자수익/기타잡수입/ 사업수입	27,448,926
8	체육회	11,613,942	445,800	3.8%	재정위원출연및기타수입	-
9	생활체육회	2,699,332	75,487	2.8%	회장단출연금/이자	-
10	장애인체육회	1,866,098	41,745	2.2%	회장단출연금/이자	-
11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	5,466,917	438,960	8.02	장비사용/임대료/간접경비	250,000
12	환경연수원	3,329,740	87,907	2.6%	시설사용료수입/ 이자수익	8,027,827
13	여성정책개발원	1,782,532	708,111	39.7%	이자수익/출판수입/ 연구용역과제수입	123,254
14	청소년지원센터	4,645,165	218,212	4.7%	일반부담금/잡수입	20,824
15	청소년수련센터	5,981,585	1,419,068	23.7%	임대료수입/사용료수입/ 잡수입 등	1,533,397
16	장학회	1,431,918	566,918	39.6%	입사생부담금/이자등	105,882
17	종합자원봉사센터	310,000	-	0.0%	-	-
18	행복재단	1,973,614	973,614	49.3	도출연금/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918,765
19	테크노파크	16,449,417	3,140,171	19.1	임대료/이자수입 등	29,250,416
20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	1,980,240	870,122	44%	장비이용료/입주임대료/ 수탁사업/기관흡수수입/ 예금이자/세금환급 등	510,118
21	그린카부품진흥원	1,821,500	-	-	-	-
22	안용복재단	889,267	42,766	4.8%	후원금/이자수입	47,501

출처: 김광석, 2012.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4p. <표 2-12> 2011년도 기관·단체별 예산 및 자체수입비율

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경영평가 결과

○ 경상북도의 출자 및 출연기관,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공시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후에는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 매년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개방 공시함(경상북도, 2016)⁷⁾

○ 경영평가 개요

- 평가 대상기관들은 경상북도가 출자·출연·보조하는 27개 기관으로 평가 수행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위탁하여 실시함
- 평가체계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 노력을 하고, 평가 지표는 3대 부문인 리더십/전략,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으로 구분함
- 평가방법은 자료제출을 받아 서면심사와 현지확인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하였으며, 평가점수에 따라서 크게 5개 등급(S~D)으로 분류 평가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

-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등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기관장에 대한 지급율은 220%~0%, 임·직원에 대한 지급율은 180%~0%
- 2015년과 대비해서 평균 10~15% 정도 지급률이 상승 조정되었음
- 경영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의 등급은 C등급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원기준액과 대비하여 $\pm 10\%$ 로 차등하여 활용. 기관 별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에만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음
-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인 기관은 기준액 대비 50% 지원, 3억 이하의 기관은 감액시 50% 경감하여 지원함

7) 경상북도청 예산담당관. 2016.09.05. 2016년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알림. http://www.gb.go.kr/open_content/news/index.jsp?LARGE_CODE=65&MEDIUM_CODE=10&SMALL_CODE=10&SMALL_CODE2=&SMALL_CODE3=&URL=/Common/board/board.jsp?BD_CODE=bs_gongji&B_STEP=28210599&cmd=2

- 최종적으로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기관장의 인사관리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음

○ 2016년 경영평가 결과(등급별)

- S등급은 3개 기관이 있으며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체육회 등임
- A등급은 13개 기관이 있으며 “경북농민사관학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경북행복재단,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등임
- B등급은 7개 기관이 있으며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독도재단,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북장학회, 문화엑스포,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등임
- C등급은 4개 기관이 있으며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등임

3.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별 운영 사례 분석

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⁸⁾

○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경영공시의 시기 등)에 의해 설립됨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근거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2011.09.26.) 등에 명시되어 있음
- 경상북도의 문화산업을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8)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s://gcube.or.kr:1021/>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사업 안내⁹⁾

- 중장기 로드맵 관점에서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의 사업 운영 경과를 분석해 보면, 2013~2015년은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단계였고, 2013년~2017년은 문화산업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13년~2020년은 글로벌 시장 성공적 진출을 로드맵으로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은 6대 전략을 구축 이행하고 있음. 즉, ‘기초인프라 강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마케팅 강화, 융합 콘텐츠 육성, 인재 발굴 및 양성, 기업 유치 및 육성’ 등임
-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은 또한 경북 23개 시·군의 문화컨텐츠 원형을 발굴하여 문화컨텐츠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활동

-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 문화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 영화·드라마 등 영상산업 지원사업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음

○ 조직 및 인력

- 2016년을 기준으로 이사장은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으며, 이사는 권영세 안동시장, 서원으로는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재임기

9) <https://gcube.or.kr:1021/home/sub2/sub1.asp>

간 동안 임직하도록 되었음

- 인력은 원장, 본부장 1급, 2~3급의 팀장 3인, 4~6급 일반직 팀원 15인, 6~7급 기능직 팀원 2명으로 총 22명이 재직 중 (아래 <표 3-5> 참조)

<표 3-5> 2016년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임원 현황

구분	이사장		이사		감사		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임원수	-	1	1	7	-	2	1	9

구분	원장	본부장	일반직				기능직		계
			팀장		팀원		팀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1	1	4		14		2		22
현원	1	1	3		15		2		22

출처: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6.10.09.)¹⁰⁾

<그림 3-1> 2016년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조직도



출처: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6.10.09.)¹¹⁾

10) https://gcube.or.kr:1021/home/sub5/sub2_2.asp

-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의 인력 22명으로, 예산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881,446천원이었으며, 집행 총액은 871,784원임(아래 <표 3-6> 참조)

<표 3-6>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예 산	807,520	835,814	881,446
인 원	21	22	22
집행액	805,972	803,252	871,784

* 2012. 9월 정규직 14명 채용

* 2014년도 고위 직급(4급 2명) 중도 퇴직자 하위 직급(6급 2명) 총원

출처: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6.10.09.)¹²⁾

○ 경영평가

- 201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문화컨텐츠진흥원의 총득점은 86.39점으로 총 14개 지표 중 평점 90점을 초과한 지표는 ‘비전과 중장기계획, 고객만족경영, 기관생산성, 문화컨텐츠 컨설팅 및 사업유치 실적, 문화컨텐츠업체 인큐베이팅 실적, 문화컨텐츠 상품화 기반조성 및 지원 실적’ 등 6개 지표임
- 지표별로 보면 ‘리더십과 책임경영, 윤리투명경영, 인적자언관리, 주요사업 성과관리 활동,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노력’ 등에서 실적이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비전과 중장기계획, 고객만족경영과 기관생산성, 사업성과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일자라·경제 유형에 소속한 기관과 비교할 때 ‘비전과 중장기계획, 고객만족경영, 기관생산성 등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하고, ‘주요사업 성과관리 활동,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노력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11) https://gcube.or.kr:1021/home/sub6/sub2_3.asp12) https://gcube.or.kr:1021/home/sub5/sub2_2_2.asp?bseq=46&cat=-1&sk=&sv=&yy=&page=1&mode=view&aseq=5142

것으로 나타남

-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리더십·전략, 경영활동, 경영성과 부문의 평점은 각각 80.08점, 77.59점, 99.11점임. 경영활동 부문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리더십·전략, 경영성과 부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였음
- 일자리·경제 유형과 비교해서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미흡하나, 리더십·전략,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우수한 수준임
- 부문별 전년대비 실적은 리더십·전략, 경영활동 부문은 하락하였고,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상승함(아래 <표 3-7> 참조)
- 2016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C등급을 받아, 경영컨설팅을 받는 대상기관이 되었음

<표 3-7>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의 2015년 경영평가 결과

평가범주	FOCUS	평 가 지 표	득점(A)	배점(B)	A/B	
공통 지표	리더십/ 전략	• 리더십 • 전략 Plan	리더십과 책임경영	7.02	9.00	78.00%
			비전과 중장기계획	6.43	7.00	91.86%
			고객만족경영	3.62	4.00	90.50%
			윤리·투명 경영	2.95	5.00	59.00%
			소 계(4항목)	20.02	25.00	80.08%
	경영 활동	• 과정 • 활동 • 노력 • 시스템 • 효율성	인적자원관리	5.11	7.00	73.00%
			업무혁신 노력	8.84	11.00	80.36%
			정책준수 노력	8.75	10.00	87.50%
			주요사업 성과관리 활동	4.18	6.00	69.67%
			전년도 평가지적사항 개선노력	1.83	3.00	61.00%
			소 계(5항목)	28.71	37.00	77.59%
	개별 지표	경영 성과	• 고객만족 • 생산성 • 성과	고객만족도	2.66	3.00
기관생산성				5.00	5.00	100.00%
사업성과 1				12.00	12.00	100.00%
사업성과 2				10.00	10.00	100.00%
사업성과 3				8.00	8.00	100.00%
소 계(5항목)				37.66	38.00	99.11%
전체 합계(14항목)			86.39	100.00	86.39%	

출처: 201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14.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

○ 수입과 지출 내역

- 2015년도 예산회계 결산 자료에서 수입 지출 결산 총괄비를 확인하면, 운영비 부문에서 운영비 수입합계는 2,400,475,391원, 운영비 지출합계는 1,883,190,148원임
- 사업비 부문에서 사업비 수입합계는 5,246,457,080원, 사업비 지출합계는 3,741,765,434원임(아래 <표 3-8> 참조)

<표 3-8> 2015년 수입·지출결산 총괄 - 운영비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경북도출연금	1,252,000,000	경영지원운영	1,687,615,098
안동시출연금	531,000,000	전략기획운영	23,299,190
자체수입	83,965,047	콘텐츠인프라운영	42,299,700
전년도명시이월	200,000,000	디지털미디어운영	23,756,800
전년도집행잔액이월	281,678,384	전년도명시이월비	99,106,270
전년도운영비	51,831,960	세입세출외지출	7,113,090
		운영비지출합계	1,883,190,148
운영비수입합계	2,400,475,391	운영비차기이월금	517,285,243
합계	2,400,475,391	합계	2,400,475,391

2015년 수입·지출결산 총괄 - 사업비

(단위: 원)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국비보조금	1,809,929,000	국비	253,931,934
경북도보조금	2,029,500,000	국·도·안동시·기타	1,166,462,680
안동시보조금	579,000,000	경북도비	1,356,722,220
기타기관보조금등	142,800,000	도·안동시비	224,717,550
전기이월사업비	685,228,080	안동시비	40,874,160
		기타기관(포항TP)	14,000,000
		전기이월금	685,056,890
		사업비지출합계	3,741,765,434
사업비수입합계	5,246,457,080	사업비차기이월금	1,504,691,646
합계	5,246,457,080	합계	5,246,457,080

경상북도문화컨텐츠진흥원. (2016.04.04). 2015년도 예산회계 결산- 수입·지출결산 총괄. (검색일자: 2016.10.09.)¹³⁾

<표 3-9> 2016년도 지출예산 총괄(조직·성질별)

(단위: 천원)

부문/정책/단위/ 세부사업/목그룹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00 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	6,202,449	100%	3,153,912	100%	3,048,537	96.7%
1100 경영지원운영	1,522,988	24.6%	1,596,988	50.6%	△ 74,000	-4.6%
1 인력운영비	957,947	15.4%	945,046	30.0%	12,901	1.4%
100 인건비	957,947	15.4%	945,046	30.0%	12,901	1.4%
101 인건비	957,947	15.4%	945,046	30.0%	12,901	1.4%
2 기본경비	565,041	9.1%	541,942	17.2%	23,099	4.3%
200 물건비	441,580	7.1%	430,320	13.6%	11,260	2.6%
201 일반운영비	358,120	5.8%	346,860	11.0%	11,260	3.2%
202 여비	31,000	0.5%	31,000	1.0%	0	0.0%
203 업무추진비	30,860	0.5%	30,860	1.0%	0	0.0%
204 직무수행경비	21,600	0.3%	21,600	0.7%	0	0.0%
300 경상이전	102,177	1.6%	102,177	3.2%	0	0.0%
304 연금부담금 등	102,177	1.6%	102,177	3.2%	0	0.0%
400 자본지출	18,000	0.3%	7,000	0.2%	11,000	157.1%
405 자산취득비	18,000	0.3%	7,000	0.2%	11,000	157.1%
800 예비비및기타	3,284	0.1%	2,445	0.1%	839	34.3%
801 예비비	3,284	0.1%	2,445	0.1%	839	34.3%
3 사업비	0	0.0%	110,000	3.5%	△ 110,000	-100.0%
1200 전략기획운영	1,884,900	30.4%	54,900	1.7%	1,830,000	3333.3%
2 기본경비	24,900	0.4%	24,900	0.8%	0	0.0%
200 물건비	24,900	0.4%	24,900	0.8%	0	0.0%
201 일반운영비	9,900	0.2%	9,900	0.3%	0	0.0%
202 여비	15,000	0.2%	15,000	0.5%	0	0.0%
3 사업비	1,860,000	30.0%	30,000	1.0%	1,830,000	6100.0%
1300 콘텐츠인프라운영	756,420	12.2%	486,420	15.4%	270,000	55.5%
2 기본경비	56,420	0.9%	36,420	1.2%	20,000	54.9%
200 물건비	36,420	0.6%	36,420	1.2%	0	0.0%
201 일반운영비	15,420	0.2%	15,420	0.5%	0	0.0%
202 여비	21,000	0.3%	21,000	0.7%	0	0.0%

13) https://gcube.or.kr:1021/home/sub5/sub2_3_2.asp?bseq=42&cat=-1&sk=&sv=&yy=&page=1&mode=view&aseq=5140

부분/정책/단위/ 세부사업/목그룹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700 내부거래	20,000	0.3%	465,420	14.8%	△ 445,420	-95.7%
	706 기타내부거래	20,000	0.3%	15,420	0.5%	4,580
3 사업비	700,000	11.3%	450,000	14.3%	250,000	55.6%
1400 디지털미디어운영	541,692	8.7%	411,692	13.1%	130,000	31.6%
2 기본경비	31,692	0.5%	31,692	1.0%	0	0.0%
200 물건비	31,692	0.5%	31,692	1.0%	0	0.0%
201 일반운영비	16,692	0.3%	16,692	0.5%	0	0.0%
202 여비	15,000	0.2%	15,000	0.5%	0	0.0%
3 사업비	510,000	8.2%	380,000	12.0%	130,000	34.2%
1500 명시이월비	1,496,449	24.1%	603,912	19.1%	892,537	147.8%

<표 3-10> 2016년도 수입예산 총괄

(단위: 천원)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6,202,449	3,153,912	3,048,537
01 보조금	4,586,000	2,486,000	2,100,000
10 국비 보조금	1,460,000	-	1,340,000
101 중소기업청	120,000	-	120,000
101-02 목적사업비	120,000	-	120,000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	120,000	-	120,000
102 문화체육관광부	1,340,000	-	1,340,000
102-02 목적사업비	1,340,000	-	1,340,000
·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	1,200,000	-	1,200,000
· 지역스토리랩프로그램육성지원	110,000	-	110,000
· 웹툰창작체험관조성및운영	30,000	-	30,000
11 지방비 보조금	3,126,000	2,486,000	640,000
111 경상북도보조금	2,316,000	1,926,000	390,000
111-01 기관운영비	1,116,000	1,116,000	0
111-02 목적사업비	1,200,000	810,000	390,000
·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	240,000	-	240,000
· 지역스토리랩프로그램육성지원	20,000	-	20,000
· 경북문화콘텐츠정책포럼운영지원	60,000	60,000	0
· 경북문화콘텐츠기업지원	300,000	300,000	0
· 문화콘텐츠전문기양성아카데미운영	50,000	50,000	0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경북형컬처콘텐츠피칭쇼지원	30,000	30,000	0
	· 제18회경상북도전통문양디자인공모전	50,000	50,000	0
	· 제12회경상북도캐릭터디자인공모전	50,000	50,000	0
	· 제14회경북영상콘텐츠전국시나리오공모전	60,000	60,000	0
	· 웹툰콘텐츠제작지원	50,000	50,000	0
	· 제8회경상북도지사배e-스포츠대회개최지원	70,000	-	70,000
	· 경북웹툰창작체험관조성및운영	20,000	-	20,000
	· 경북3대문화권활용문화상품제작지원	100,000	-	100,000
	· 경북창조인재를위한창작하우스조성	100,000	-	100,000
112	안동시보조금	810,000	560,000	250,000
	112-01 기관운영비	400,000	400,000	0
	112-02 목적사업비	410,000	160,000	250,000
	·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운영지원	360,000	-	360,000
	· 웹툰콘텐츠제작지원	50,000	50,000	0

장·관·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2	자체수입	120,000	64,000	56,000
	21 사업수입	120,000	64,000	56,000
	211 시설사용료수입	12,000	25,000	△13,000
	212 장비임대수입	10,000	10,000	-
	213 수강료수입	2,500	2,000	500
	214 위탁사업간접비	95,500	27,000	68,500
03	이월금	1,496,449	603,912	892,537
	30 명사이월	1,496,449	603,912	
	302 명사이월(사업비)	1,496,449	603,912	
	· 권정생동화애니메이션제작지원및산업화	9,777	-	
	· 2015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구축및운영	838,611	-	
	· 2015지역스토리랩프로그램육성지원	40,390	-	
	· 2015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지원	288,525	-	
	· 독도애니메이션제작지원	243,402	-	
	· 2015웹툰콘텐츠제작지원	54,131	-	
	· 경북웹툰창작체험관조성및운영	8,843	-	
	· 경북형컬처콘텐츠피칭쇼지원사업	12,770	-	

나.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¹⁴⁾

○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¹⁵⁾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있음
- 설립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에 있음. 또한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유사업무를 집적화하여 능동적·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함
- 설립근거는 법률과 조례, 규칙에 근거함. 법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가 있음. 조례로는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7조 법인의 기능에 나타나 있음. 규칙으로는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가 그 설립 근거가 됨
- 법인의 기능은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이 주가 됨.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청소년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함. 그 밖에 청소년 육성정책 이념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여함
- 법인설립 경위는 2007년 5월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이 시초임

○ 사업 안내¹⁶⁾

-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당 진흥원의 미션 및 비전을 소개하고 있음. 미션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음. 이는 건전한 청소년들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개발하도록 역할을 다한다는

14)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we7942.or.kr/>

15)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진흥원 소개 페이지 http://www.we7942.or.kr/bbs/content.php?co_id=we_about (검색일자: 2016.11.21.)

16)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진흥원 미션 및 비전 페이지 http://www.we7942.or.kr/bbs/content.php?co_id=we_vision (검색일자: 2016.11.21.)

것을 말함. 그리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청소년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함을 말함

- 비전은 청소년이 신뢰하고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청소년 전문기관이 되는 것임. 이는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 도내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부모, 교사 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청소년 상담과 활동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제해결 및 역량강화에 관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함. 이로써 최고의 청소년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경북도청 청소년진흥원의 비전이라 할 수 있음
- 경북도청 청소년진흥원의 추진체계를 정리하자면, 건전한 청소년육성이라는 미션과 청소년이 신뢰하고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청소년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에 6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음.
- 아래 <표 3-11>에 나타나있듯, 6가지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조밀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청소년 전화 1388 콜센터 및 임시 보호시설 운영과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이라는 과제를 실시함. 둘째, 학교밖 및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유학교 운영이라는 과제를 실시함. 셋째, 예방상담 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학교폭력대응 또래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상담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청소년 부모교육 운영이라는 과제를 실시함. 넷째, 시군센터 지원 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 컨설팅, 슈퍼비전이라는 과제를 실시함. 다섯째, 청소년 활동 안전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활동 신고제 운영, 국가청소년 활동인증제 지원을 함. 여섯째, 청소년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활동 동아리 발굴 및 지원, 청소년 국제성취포상제 확대 운영, 청소년참여 및 특별 위원회 운영이라는 과제를 실시함
- 이러한 진흥원의 경영방침은 신뢰경영, 고객만족경영, 행복경영, 전문성경영이라는 방침을 따름

<표 3-11> 도정목표 및 도 청소년정책과제에 따른 6대 전략목표 및 17개 전략과제

도정목표 (청소년분야정책과제)	6대 전략목표	17개 전략과제
생활이 풍요로운 경북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사회 전망조밀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청소년전화 1388 콜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 (청소년 역량강화/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학교밖 및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 역량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역량 강화/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유학교 운영
생활이 풍요로운 경북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예방상담 기능 강화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학교폭력대응 토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 상담자원봉사활성화(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청소년 부모교육 운영
생활이 풍요로운 경북 (청소년정책추진 체계화)	사군센터 지원 기능 강화 (청소년정책추진 체계화)	○ 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 ○ 컨설팅, 슈퍼비전(청소년정책추진 체계화)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 활동 안전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청소년활동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 청소년활동 신고제 운영(청소년 친화적 환 경조성) ○ 국가청소년 활동인증제 지원
생활이 풍요로운 경북 (청소년 역량강화)	청소년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 (청소년 역량강화)	○ 청소년활동 동아리 발굴 및 지원 ○ 청소년 국제성취포상제 확대 운영(청소년 역량강화)
세계로 향하는 경북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세계로 향하는 경북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참여 및 특별위원회 운영세계로 향 하는 경북(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출처: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진흥원 미션 및 비전 (검색일자: 2016.11.21.)¹⁷⁾

○ 조직 및 인력

- 2015년 경영평가 결과공개(2016.09.08.¹⁸⁾)에 나타난 임직원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임원수 14명임. 총 임원수 14명 중 당연직 이사는 6명, 위촉직 이사는 6명, 위촉직 감사는 2명임. 직원수는 정원은 39명으로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24명이 정원임.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원은 35명으로 정규직 12명, 비정규직은 23명임. 그 외 인력은 52명으로, 학부모지

17) http://www.we7942.or.kr/bbs/content.php?co_id=we_vision18)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2016.09.08.). 경영공시.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공개. (검색일자: 2016.11.21.) http://we7942.or.kr/bbs/board.php?bo_table=we_03&wr_id=53

원센터 2명, 외래상담원(시간제) 4명, 청소년 동반자 44명, 청소년배치지도사 1명, 청사관리자 1명임

- 2016년도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3-2>에서 나타났듯 원장 아래 경영혁신 TF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공드림, 도교육청 수탁센터, 활동진흥센터가 있음

<그림 3-2>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조직도



출처: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 조직도 (검색일자: 2016.11.21.)¹⁹⁾

○ 경영평가

- 2015년 경영평가 결과 경상북도청 청소년 진흥원의 평가결과는 B등급임²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정보복지위원회는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계약방법의 개선 시정을 요구함.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1% 내외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나 미편성하였

19) http://we7942.or.kr/bbs/content.php?co_id=we_organ#book15

20)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2016.09.08.). 경영공시.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공개. (검색일자: 2016.11.21.) http://we7942.or.kr/bbs/board.php?bo_table=we_03&wr_id=53

음을 지적함. 청소년인터넷 치유캠프 운영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나, 대상인원이 적고 홍보가 부족하므로 운영확대를 지시했음. 또한 도내 지역 청소년 봉사 활동 거리를 발굴해야하며, 또래상담자의 고충을 들어줄 슈퍼바이저 제도의 도입을 건의함²¹⁾

○ 수입과 지출 내역

- 2015년 조사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원 현황에 나타난 2014년 세입액 및 세출액을 확인하면 세입액은 3,813,446,438원이며 총 세출액은 3,652,737,780원임

<표 3-12> 2014년도 세입액 및 세출액

(단위: 원)

총 세입액(A)	총 세출액(B)	잔 액(A-B)	비 고
3,813,446,438	3,652,737,780	160,708,658	반납예정액 79,617,220원 포함

2014년도 세출예산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A-B)	비 고
합 계	3,813,400	3,652,737	160,663	
인건비	1,545,596	1,525,272	20,324	
경상비	400,613	321,817	78,796	
사업비	1,867,191	1,805,648	61,543	

2015년도 당초예산

(단위: 천원)

항 목		예산 편성액	비 고
임시적 수입	기타수입	130,000	
	부담금	356,870,000	
도비보조금	출연금	30,000,000	
	민간이전	2,965,460,000	
보존수입	잉여금	84,340,000	
합 계		3,436,800,000	

출처: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2015.01.07.). 경영공시. 경북청소년진흥원 현황(2014~2015). (검색일자: 2016.11.21.)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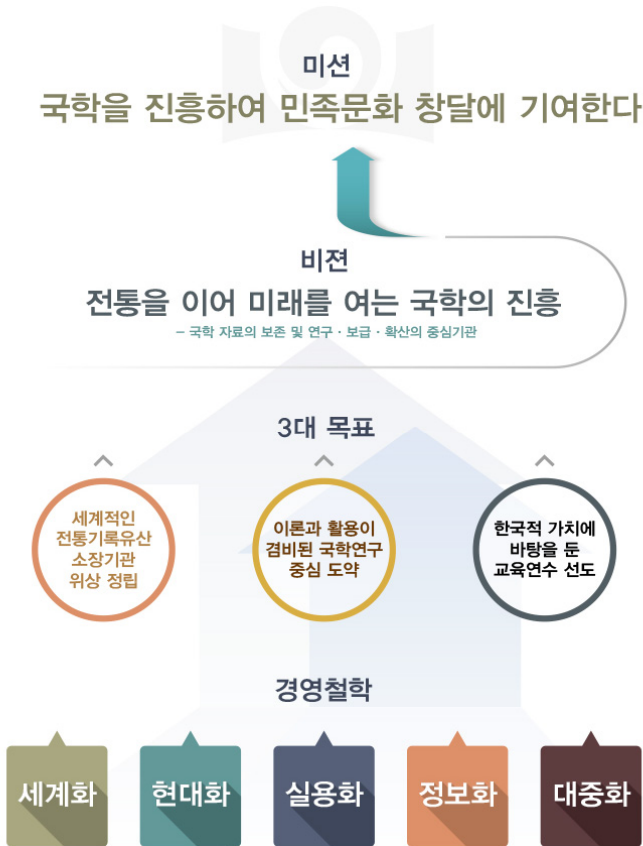
21) 경상북도청 청소년진흥원(2016.04.28.). 경영공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검색일자: 2016.11.21.) http://we7942.or.kr/bbs/board.php?bo_table=we_03&wr_id=47

다.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²³⁾

○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

- 한국국학진흥원의 미션은 아래 <그림 3-3>에서와 같이 국학을 진흥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에 있음. 비전은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그림 3-3>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미션과 비전



출처: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미션과 비전 (검색일자: 2016.11.21.)²⁴⁾

22) http://we7942.or.kr/bbs/board.php?bo_table=we_03&wr_id=42

23)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6.11.21.) <http://www.koreastudy.or.kr/>

24) http://www.koreastudy.or.kr/main/content.action?prog_id=KS010101&co_id=1

진흥으로, 국학 자료의 보존 및 연구·보급·확산의 중심기관이 되고자 함. 이를 위한 3대 목표로는 첫째, 세계적인 전통기록유산 소장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둘째, 이론과 활용이 겸비된 국학연구 중심의 도약 셋째, 한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교육연수 선도가 있음. 이를 위한 경영철학으로는 세계화, 현대화, 실용화, 정보화, 대중화가 있음

- 설립 근거는 법률과 조례에 정해져 있음. 법률은 민법 제32조이며, 조례는 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경상북도 조례 제3071호)임²⁵⁾
- 연혁을 살펴보면, 1995. 12. 07.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01. 10. 05.에 흥익의 집(본관)이 개관함. 2006. 06. 20에는 유교문화박물관이 개관하였으며, 2007. 05. 03.에는 국학문화회관이 개관함.
- 관계기관에는 경상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음. 재단이사장은 경상북도 도지사이며, 최초 출연금은 500백만원임.

○ 사업 안내

- 주요 기능으로는 기록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학자료의 조사·수집 및 정리·보존, 국학자료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가공, 국학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의 수립·추진,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운영,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운영이 있음

○ 조직 및 인력

- 아래 <그림 3-4>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은 원장, 부원장, 국학진흥자문위원회, 이사회와 비상근 감사, 기획조정실, 연구부, 자료부, 연수부, 사무국 및 유교 문화박물관, 한문교육원, 국학문화회관, 국학정보센터로 이루어져 있음

25) http://www.koreastudy.or.kr/main/content.action?prog_id=KS070401&co_id=82

<그림 3-4> 한국국학진흥원 조직도



출처: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조직도 (검색일자: 2016.11.21.)²⁶⁾

- 아래 <표 3-13>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한국국학진흥원의 임원은 기관장, 이사, 감사를 합하여 22명임. 직원은 일반 정규직60명 정원에 현원 52명, 상용정규직 3명, 비정규직 87명으로 총 142명임

<표 3-13>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인력현황

(단위: 명)

구 분				인원
임 원	합 계	상 임	남	-
			여	-
	기관장	상 임	남	11
			여	-

26) http://www.koreastudy.or.kr/main/content.action?prog_id=KS010302&co_id=53

구 분				인원
	이 사	비상임	여	-
			남	1
		상 임	남	-
			여	-
		비상임	남	8
			여	-
	감 사	상 임	남	-
			여	-
		비상임	남	2
			여	-
직 원	합계(A+B+C+D)			142
	일 반	정 원		60
	정규직	현원(A)		52
	상 용	합계(B)		3
	정규직	무기계약직		3
		청원경찰		-
	비정규직	합계(C)		87
		기간제		87
		단시간		-
		기 타		-
소속 외 인력(D)			-	

출처: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 인력현황. (검색일자: 2016.11.21.)²⁷⁾

○ 경영평가

- 한국국학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등급은 C등급임²⁸⁾
- 2016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직원채용 부적정으로 훈계 1명을 처분하였으며, 고문서 번역 계약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보조가방 제작 협상에 대한 계약,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기금관리 부적정, 성과급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업무용 관용차량 사용 부적정

27) http://www.koreastudy.or.kr/main/content.action?prog_id=KS070402&co_id=83

28) http://www.koreastudy.or.kr/main/content.action?prog_id=KS070407&co_id=88

등에 대해 주의를 받음²⁹⁾

○ 수입과 지출 내역³⁰⁾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합계가 24,771,32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3,244,324천원, 특별회계는 1,527,000천원임

<표 3-1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단위: 천원)

구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반회계	23,244,324
특별회계	1,527,000
합계	24,771,324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2016.03.30.).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검색일자: 2016.11.21.).³¹⁾

- 아래 <표 3-15>에서 알 수 있듯 일반회 중 운영비는 경상북도비, 안동시비, 자체재원으로 구성되며 경상북도비가 14.72%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함. 사업비는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전통스토리 계승활용, 연구사업비로 사용이 됨. 전통스토리 계승활용부분에서 36.69%로 많은 투자가 있음

29) 경상북도 한국국학진흥원.(2016.05.27.) 2016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 조치결과. (검색일자: 2016.11.21.) http://www.koreastudy.or.kr/main/bbs/read.action?bc=72&wr_id=2&ca_id=0¤tPage=1&searchColumn=&searchKeyword=&prog_id=KS070424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03.30.).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검색일자: 2016.11.21.). http://www.koreastudy.or.kr/main/bbs/read.action?bc=76&wr_id=16&ca_id=0¤tPage=1&searchColumn=&searchKeyword=&prog_id=KS070428

31) http://www.koreastudy.or.kr/main/bbs/read.action?bc=76&wr_id=16&ca_id=0¤tPage=1&searchColumn=&searchKeyword=&prog_id=KS070428

<표 3-1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4,771,324	100.00	22,203,798	100.00	2,567,526	11.56
일반회계	23,244,324	93.01	20,872,384	94.00	2,371,940	11.36
운영비	5,254,000	22.66	4,667,000	21.02	587,000	12.58
1. 경상북도비	3,822,000	14.72	3,137,000	14.13	685,000	21.84
2. 안동시비	1,200,000	4.99	1,000,000	4.50	200,000	20.00
3. 자체재원	232,000	2.94	530,000	2.39	△298,000	△56.23
사업비	15,981,000	66.85	15,543,000	70.00	438,000	2.82
국학진흥정책기반조성	2,701,000	11.97	2,876,000	12.95	△175,000	△ 6.08
1 문화체육관광부	2,701,000	11.97	2,876,000	12.95	△175,000	△ 6.08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1,634,000	7.16	1,720,000	7.75	△ 86,000	△ 5.00
1 문화체육관광부	1,634,000	7.16	1,720,000	7.75	△ 86,000	△ 5.00
전통스토리 계승 활용	7,866,000	36.69	8,815,000	39.70	△949,000	△10.77
1 문화체육관광부	7,866,000	36.69	8,815,000	39.70	△949,000	△10.77
연구사업비	3,780,000	11.04	2,132,000	9.60	1,648,000	77.30
1. 경상북도	2,230,000	7.87	1,372,000	6.18	858,000	62.54
2. 안동시	150,000	0.67	160,000	0.72	△ 10,000	△ 6.25
3. 군위군	1,400,000	2.68	600,000	2.87	800,000	133.33
과년도 이월	2,009,324	3.50	662,384	2.98	1,346,940	203.35
특별회계	1,527,000	6.99	1,331,414	6.00	195,586	14.69
1 국학문화회관 수입	1,527,000	5.96	1,331,414	6.38	195,586	14.69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2016.03.30.).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검색일자: 2016.11.21.).³²⁾라.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³³⁾

○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북도내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육에 힘써 도민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인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됨

32) http://www.koreastudy.or.kr/main/bbs/read.action?bc=76&wr_id=16&ca_id=0¤tPage=1&searchColumn=&searchKeyword=&prog_id=KS07042833) <http://www.gbcp.or.kr/kr>

<그림 3-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목적



출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영이념 (검색일자: 2016.11.21.)³⁴⁾

-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장기비전으로는 첫째, 문화유적의 가치창조를 실현하는 연구기관, 둘째, 문화유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에 있음. 이를 위해 첫째,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개발, 둘째,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셋째, 사업영역의 확대, 넷째, 유적 테마공원 조성, 다섯째, 경북사료관 유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

34) <http://www.gbcp.or.kr/kr/sub/aboutus02.html>

<그림 3-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비전



출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영이념 (검색일자: 2016.11.21.)³⁵⁾

- 설립 근거는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에 나타나있음.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경상북도와 인근 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³⁶⁾

○ 사업 안내

-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2016년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면, 크게 4개 영역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자치단체 위탁(협력)사업, 문화유산교육 및 기획전시, 직원연구역량강화 분야에서의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음
- 첫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은 39건 6,009백만원으로 책정됨. 지표·입회조사가 20건, 100백만원이며, 시·발굴조사가 19건 5,909백만원임
- 둘째, 자치단체 위탁(협력)사업은 6건 1,730백만원임. 그 세부 사항으로 경

35) <http://www.gbcp.or.kr/kr/sub/aboutus02.html>

3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계법령정보 (검색일자: 2016.11.21.) http://www.gbcp.or.kr/kr/bbs/list.html?a_idx=A130718152452

상북도 태실 실태조사는 전국 최다의 도내 태실에 대한 보존상태 일제조사
 사를 통한 선조의 생명존중사상을 회복하고자 함. 경상북도 충효문화재 실태
 태 조사를 통해 경북소재 효자, 효열, 정려비 등 도내에 산재한 충효문화
 재 일제조사를 통한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함. 경상북도 정보화시스
 템유지관리를 통해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으로 양질의 문화재 관련정보
 제공하고자 함. 천년왕국 신라의 재조명사업은 영남에서 태동, 삼국을 통
 일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의 원류를 형성한 신라에 대한 연구성과를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전30권)으로 집대성함. 영천시 완산동고분군 유
 적공원화사업은 완산동고분군 유적공원화사업과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지원, 고분군 GPS측량 및 분포도를 조사함. 한국의 읍성 전국학
 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청도읍성의 조사성과를 활용하
 여 읍성을 주제로 한 전국단위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문화재 홍보 및
 연구원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셋째, 문화유산교육 및 기획전시의 중점적인 사업들은 문화재 체험교실 운
 영을 통해 지역문화재의 우월성 홍보를 통한 경북 정체성 확립하고 지역
 사회문화교육 및 전시관 상설운영을 통해 지역문화의 우수성 홍보하는 등
 지역민에게 내 고향에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소개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향심 고취하고자 함
- 넷째, 경북(대구)지역 청동기 시대 석관묘 자료집 발간과 직원 워크샵, 직
 원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원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홍보하고 이들
 정보공유를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조직 및 인력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직은 아래 <그림 3-7>과 같이 이사장, 이사회,
 연구원장, 자문위원회, 기획연구실장, 조사연구실장, 사무처장으로 이루어
 져 있음
- 인건비는 2014년 기준 2,136,052천원이 집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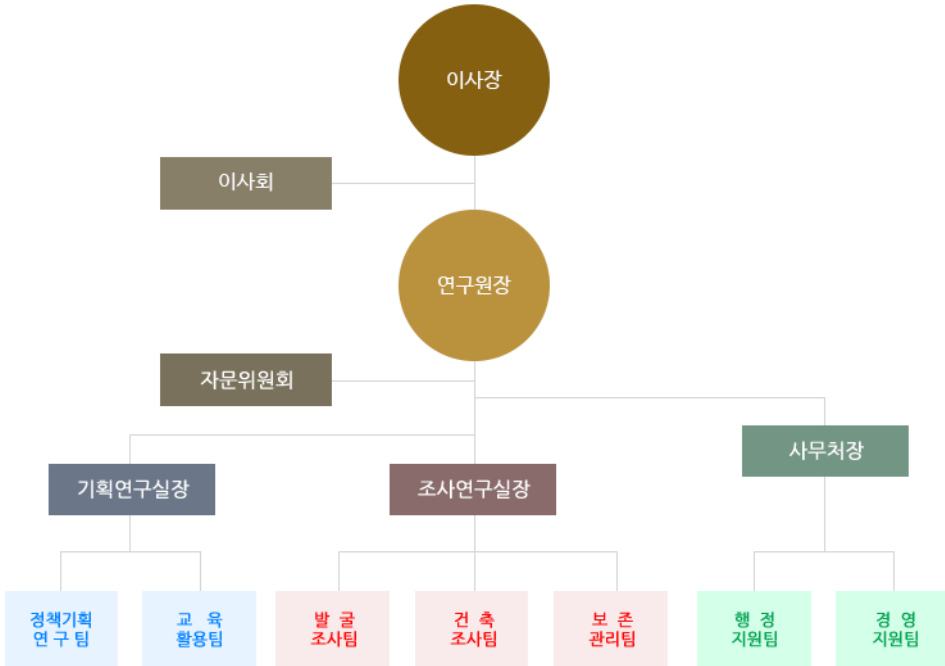
<표 3-16> 2014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합계액	2,396,017	2,136,052	
기본급	1,709,634	1,625,681	직원분 기본급
수당	6,863,83	510,371	직원분 각종수당

출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4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검색일자: 2016.11.21.)³⁷⁾

<그림 3-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직도

출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일반현황. 조직 및 부서안내. (검색일자: 2016.11.21.)³⁸⁾37) http://www.gbcp.or.kr/kr/bbs/view.html?a_idx=A150424112421&category=&search=&keyword=&page=&b_num=4&look=3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일반현황. 조직 및 부서안내. (검색일자: 2016.11.21.) http://www.gbcp.or.kr/kr/sub/aboutus03_4.html

○ 수입과 지출 내역

- 아래 <표 3-17>의 2016년도 예산서의 자금운영계획에 따르면, 당년도 예정 수입자금은 8,511,390천원이며, 지출자금은 8,511,390천원임 수입자금은 대부분 영업수익에서 나왔으며, 영업수익은 당년도 예정액 8,339,436천원임.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그 액수는 7,789,440천원임

<표 3-17> 2016년도 예산서: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감(A-B)	
수입자금	8,511,390	11,194,745	△2,683,355	
영업수익	계	8,339,436	7,561,145	778,291
	자체사업수익	6,609,436	7,531,145	△921,709
	대행사업수익	1,730,000	30,000	1,700,000
영업외수익	계	118,961	2,600	116,361
	이자수익	86,361	1,000	85,361
	임대료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32,600	1,600	31,000
특별이익	계	0	0	0
	전기손익수정이익			
투자자산수입	계	0	0	0
	대여금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 매각수입	계	0	0	0
	토지			
고정부채수입	계	0	0	0
	외국차관			
자본잉여금수입	계	0	0	0
	출연금			
자본금	계	0	0	0
	자본금			
전년도 이월금	계	52,993	3,631,000	△3,578,007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52,993	3,631,000	△3,578,007
	미지급금·비용			

출처: 2016년도 수입지출자금예산서 (검색일자: 2016.11.21.)³⁹⁾

<표 3-18> 2016년도 예산서: 자금운영계획 - 지출자금

(단위: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감(A-B)	
수입자금	8,511,390	11,194,745	△2,683,355	
영업비용	계	7,789,440	9,817,001	△2,027,561
	매출원가	3,919,410	4,705,336	△785,926
	판관비	3,870,030	5,111,665	△1,241,635
영업외비용	계	0	0	0
	지급이자			
특별손실	계	0	0	0
	전기손익수정손실			
법인세등	계	520,000	936,184	△416,184
	법인세등	520,000	936,184	△416,184
투자자산	계	94,699	205,018	△110,319
	대여금·보증금	94,699	205,018	△110,319
유형자산	계	77,500	105,500	△28,000
	시설비			
	공기구비품	77,500	105,500	△28,000
무형자산	계	0	0	0
	개발비			
재고자산	계	0	0	0
	저장품			
고정부채상환	계	0	0	0
	은행차입금			
유동부채상환	계	0	0	0
	단기차입금			
예비비	계	29,751	80,000	△50,249
	예비비	29,751	80,000	△50,249
차기이월예산	계	0	51,042	△51,042
	계속비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이월금	0	51,042	△51,042
	미지급금·비용	0	0	

출처: 2016년도 수입지출자금예산서 (검색일자: 2016.11.21.)⁴⁰⁾39) http://www.gbcp.or.kr/kr/bbs/view.html?a_idx=A150424112421&category=&search=&keyword=&page=&b_num=6&look=40) http://www.gbcp.or.kr/kr/bbs/view.html?a_idx=A150424112421&category=&search=&keyword=&page=&b_num=6&look=

4.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별 현황 비교

<표 3-19> 경상북도 내 재단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현황 비교⁴¹⁾

비교요인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재단	재단법인 청도우리문화재단
설립년도	1995	2011	1998	1996	2014	2013	2001	2012
재단이사장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박약회회장	청송군수	민간인	청도군수
최초출연금	5억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17억원	2억원	24억원	4억원
기금규모(2013년)	17억5천만원	-	-	-	-	2천만원	48여4월	-
설립출범인원	34명	15명	6명	-	9명	10명	13명	15명
현재인원	53명	20명	55명	28명	9명	10명	12명	15명
설치조례	~설립및지원조례	~설립및지원조례	~설립및지원조례	~설립및지원조례	~설립및지원조례	~설립및운영조례	~설립및운영조례	~설립및운영조례
2014년 예산	1750억원	40억원	89억원	338억원	-	7억원	1억8천만원	-
주요사업	-민간소장 국학자료(기록유산)의 체계적 수집 보존 -국학연구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전통문화 체험과 미래세대 인성함양 교육연수	-문화산업 육성시책 개발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매장문화재 용역조사 -학술조사 용역 -자치단체 협력사업	-문화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 집행 -문화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 -문화엑스포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문화예술 창작 학술 진흥 -문화예술 사업 평가, 컨설팅 -창작예술 문화 배우 처 -문화예술 지표 수요 조사	-청송군 관광지 관리 운영 -청송군3대 문화권 사업 관리 및 운영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사업	-문화예술 분야 장학금 지급 -향토예술 활동 지원 -전통문화 계발 전승 활동 지원 -문화예술 시설 지원 및 연구 -향토 체육 활동 지원	-청도문화 연구 및 개발 -청도문화 보존 및 육성, 교육, 문화체험 -청도군 3대 문화권 사업 -새마을발상지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41) 경북도청 내부자료 (2016년 11월).

5. 타 시·도 안전재단 현황

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⁴²⁾

○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보호에 뜻을 모아 2000년 7월에 설립한 순수 민간법인(NGO)임. 1999년 6월에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희생자 부모와 유족 변호인단 등이 기금을 모아 만든 단체임. 이후 재단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건립하고 어린이·교사·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함⁴³⁾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키워나가며 생활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나오게 된 단체임.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이념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어린이 안전문화의 리더가 되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선진 안전문화를 위해 안전교육문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사회공헌으로 지원과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⁴⁴⁾
- 재단의 비전은 어린이 안전문화의 리더.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재단의 미션은 세 가지로, 첫째, 선진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 전문가 양성에 앞장섬. 둘째, 안전문화 캠페인 및 박람회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안전 알리미로 활약함. 셋째,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전 관련 개인, 기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함

42)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http://www.childsafe.or.kr/> (검색일자: 2017.02.15.)

43) 세계일보. 2005.09.11. [굿모닝 이사람]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고석씨. (검색일자: 2017.02.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18620>

44) http://www.childsafe.or.kr/intro/intro_1_1_2014.php

○ 사업 안내

-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안전교육, 안전문화, 사회공헌 그리고 연구개발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주요 상세 사업은 <표 3-20> 참조)
 - 첫째는 안전교육 사업. 체험식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대처능력을 키우고자 함. 안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및 교사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안전교육 의무화에 앞장서고자 함. 안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안전교육관, 찾아가는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교육, 일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학교, 가정, 화재 재난, 신변, 놀이, 교통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 스스로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1)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어린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스스로 안전을 배우는 어린이종합안전교육장으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현장 체험 교육과 상호작용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찾아가는 안전교육에는 서울시 이동안전체험교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서비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음. ‘서울시 이동안전체험교실’은 2008년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됨.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실질적인 체험안전교육 프로그램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서비스’는 현대·기아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하여 2004년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 서울, 경기, 충청 등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의식과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각 지역의 6~7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험식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안전선생님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위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실시하는 프로그램
 - 3)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한 자전

- 거타기 문화정착은 부족한 현실에서 나오게 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주말 자전거 학교’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안전한 자전거타기 습관, 안전지식, 자전거 기능 등을 익혀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전거문화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생활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주말 자전거 학교’는 건강은 물론 가족의 화합과 행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올바른 자전거 타기 습관 형성으로 생활속자전거 이용 정착과 활성화를 시키고자 함
- 4) 일반 안전교육은 ‘교사/부모 안전교육’과 ‘비상대비 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교사/부모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안전의식 확대도 매우 시급하다는 의식에서 나오게 된 프로그램임. 이에 가정 안전, 보육 시설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와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비상대비 체험관’은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전쟁기념관 6.25전쟁 상징조형물 전시실에 마련되 있으며, 전쟁, 테러, 재해, 재난과 같은 각종 비상사태 시, 안전행동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관임. 단순히 보고 듣는 기존의 여러 시설과 달리, 실제 비상대피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상시 안전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둘째는 안전문화 사업.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다양한 안전 캠페인, 박람회를 지원하고 있음.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범시민적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 1) 재단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에 대한 태도, 습관, 의식의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어린이보호장구(카시트) 장착, 우측보행, 통학로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2) 박람회는 안전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어린이들을 대상

으로 찾아가는 체험위주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말함. 가정, 재난, 교통, 자전거 등 생활전반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들을 주제로 종합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시설물을 통해 어린이, 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체험을 실시함

- 3)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비오는 날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대모비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투명우산 나눔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4)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 증제’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률 감소와 운전자 안전의식 함양 도모에 힘쓰고 있음
- 5)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보호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카시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본 사업을 통해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는 유아보호장구(카시트)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카시트 사업은 전국 3세 이하의 자녀(유아)가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공익사업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상대여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무상보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음
 - 셋째는 사회공헌 사업. 어린이 안전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 및 기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넷째는 연구개발 사업.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 안전 전문가들이 안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⁴⁵⁾
 - 1)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적극적 홍보를 지원하

45) https://www.childsafe.or.kr/intro/intro_4_2014.php

며 더불어 우리나라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재단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안전교육사업을 통한 분석 결과를 검증하여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안전교육 사업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안전을 이야기 하되 아이들의 호기심과 안전 중요성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건강한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안전 규칙들을 익히고 마음도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주고자 함

- 2) 사건 및 사고를 겪은 어린이의 경우 인지능력이나 표현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왜곡현상이 더욱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어린이 및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아동의 발달과 상태의 경중에 따라 성인이 되기까지 보살피고 관리하는 ‘어린이 트라우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3-20> 2015년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업실적

1	사업명	어린이안전교육관	사업비용	413,137 천원
	사업실적	서울시 송파구 소재, 가정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식생활안전 승강기안전 자전거안전 등 종합 안전체험장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현장 체험교육 진행		
2	사업명	이동안전체험교실	사업비용	238,030 천원
	사업실적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동복지시설로 교육버스차량이 이동해 방문교육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사례별 교육프로그램 진행 총 4단계,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3	사업명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사업비용	123,600 천원
	사업실적	국민안전처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자립도 낮은 지자체를 방문해 박람회 형식의 현장체험 안전교육 진행 전국 단위 사업		
4	사업명	그외 사업 개수 및 사업비	사업비용	444,304 천원
	사업실적	9개		
5	사업명	총 사업 개수 및 총 사업비	사업비용	1,219,071 천원
	사업실적	12개		

출처: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검색결과, 국제청결산자료,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⁴⁶⁾

○ 조직 및 인력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대표(이사회), 사무처 및 지부(청주·충북지부, 전주·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강원지부, 대전·충남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와 부설어린이집, 그리고 행정조직으로는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교육운영팀, 놀이시설팀, 이동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음(아래 <그림 3-8> 참조)
- 직원 수는 20명이며, 이사회 구성은 고석, 이경희, 이동영, 안병희, 안태순으로 구성되어 있음.⁴⁷⁾

<그림 3-8> 2017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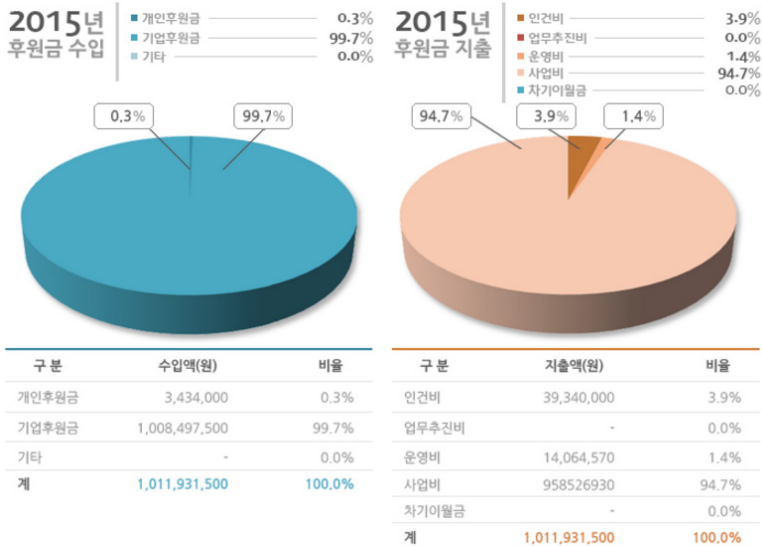
출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02.15.)⁴⁸⁾

46) 한국가이드 스타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평가정보.
http://guidestar.or.kr/npo/search/npo_search.asp
 47) 한국가이드 스타 (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평가정보.
http://guidestar.or.kr/npo/search/npo_search.asp
 48) https://www.childsafe.or.kr/intro/intro_3_2014.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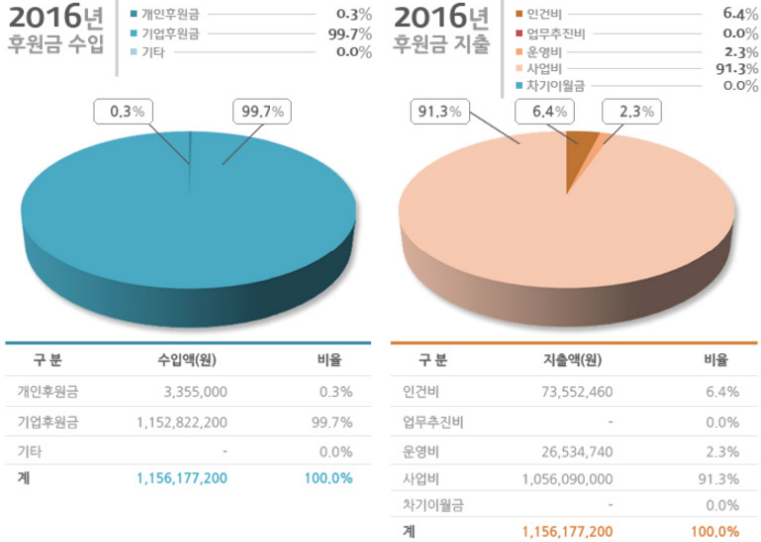
○ 경영평가

- 한국어린이재단은 후원과 지출내역을 당 재단 홈페이지에 2011년도부터 게재하고 있음(아래 <그림 3-9>, <그림 3-10> 참조)
- 2015년도의 후원금 수입은 총 1,011,931,500원이었음. 그중 개인후원금이 3,434,000원(0.3%), 기업후원금이 1,008,497,500원(99.7%)임. 지출은 인건비가 3.9%, 업무추진비가 0%, 운영비가 1.4%, 사업비가 94.7%, 차기이월금은 없음. 따라서 수입의 대부분이 기업후원금이며, 사업비가 가장 큰 지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2016년도의 후원금 수입은 총 1,156,177,200원으로 개인 후원금은 3,355,000원(0.3%), 기업후원금은 1,152,822,200원(99.7%)임. 지출은 인건비가 6.4%, 업무추진비가 0%, 운영비가 2.3%, 사업비가 91.3%, 차기이월금 0%임. 수입의 대부분이 기업후원금이며, 사업비가 가장 큰 지출 규모인 점은 2015년과 같지만, 수입이 2015년에 비해서 늘어난 점,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점(3.9%→6.4%)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3-9> 2015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수입 및 지출



<그림 3-10> 2016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수입 및 지출



출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후원페이지⁴⁹⁾

나. 2·18안전문화재단⁵⁰⁾

○ 설립 목적 및 근거 법령

- (재)2·18안전문화재단 블로그에 따르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로부터 설립허가 제2016-4호에 따라 2016년 3월 11일 재단이 설립됨⁵¹⁾
-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13년 만에 ‘2·18 안전문화재단’이 출범함. 대구시는 2015년 9월 국민안전처에 재단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6년 3월 11일에 허가증을 받음. 안전문화재단은 지하철참사 직후부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대구시와 피해자 단체 등이 갈등을 빚다가 13년 만에 빛을 보게 됨

49) https://www.childsafe.or.kr/support/support_2_2014.php

50) <http://blog.naver.com/218safety>

51) <http://blog.naver.com/218safety/220789843202>

“모든 문제를 재단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참사당시 숨진 희생자 192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현황 파악을 하고 싶다. 다음에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 김태일(영남대 교수)⁵²⁾

○ 사업 안내

-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피해자를 위한 장학복지사업, 안전방재관련 학술·연구·기술사업,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사업, 추모공원 사업 등이 있음⁵³⁾
- 세부사업으로는 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의 협조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2) 재난발생 예방의 중요성 고취를 위해 2.18안전주간 운영 사업으로 추모식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며, 3) 재난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복귀를 위해 재난피해자 힐링캠프를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고자 함⁵⁴⁾
- 대구트라우마센터는 2006년 8월 24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대학교와 대구트라우마센터 설립협약체결을 하며 만들어짐. 대구트라우마센터는 대구지하철 참사 등 각종 재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기구⁵⁵⁾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유가족 상당수는 여전히 사고에 따른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2017년 2월 14일 2·18 안전문화재단에 따르면 작년 10월~12월 지하철 참사 유가족 44가구를 상대로 처음으로 실태 파악 등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드러남. 응답자 78%가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질병이나 음주로 신체·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52) 한겨레신문. 2016.03.15. 대구지하철 참사 13년만에 안전문화재단 출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033.html#csidx13ba1833ef94497915d69d9c5ff01e0>

53) <http://blog.naver.com/218safety/220789843202>

54) 뉴데일리. 2016.03.15. 대구시, 공익재단 ‘2·18안전문화재단’ 설립 허가...사회안전망 구축.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4766>

55) <http://blog.naver.com/218safety/220795610402>

놓인 것으로 나타남.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30%가 ‘잃은 가족 그리움’, 이어 ‘추모사업 진행 미비’(25%), ‘책임자 처벌 미흡’(9%) 등이 있음. 재단 측은 이번 조사에서 그나마 나타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응답자 85% 정도가 참사를 계기로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는 등 경험(외상 후 성장)함. 재단은 당초 전체 유가족 192가구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이유로 44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참사 피해 유가족을 추가로 찾아 조사할 계획임. 또한 참사 피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개인·집단 상담, 미술·음악·독서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음⁵⁶⁾

- 2·18안전문화재단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6년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함. 협력 내용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안전문화 교육과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교류 협력이며, 이들의 안전체험 프로그램, ‘안전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양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질의 안전 교육환경 조성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함⁵⁷⁾
- 2·18안전문화재단은 2016년 11월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 대표 218명의 학부모와 함께 ‘아이와 어머니가 안전한 도시, 대구’란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참석한 학부모 218명 전원을 재단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어머니들이 안전문화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구를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짐⁵⁸⁾

○ 조직 및 인력

- 2.18안전문화재단은 김태일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이뤄져있음. 이사는 공익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인사 6명, 사망자, 부상자 등 피해자 단체 대표 5명이며, 감사는 피해자 단체에서 1명을 추천했

56) 세계일보. 2017.02.14. “14년 지나도록 지하도 못가고 밤에 불 끄는것 두려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14/20170214002043.html>

57) <http://blog.naver.com/218safety/220800122868>

58) 경북일보. 2016.11.08. 2·18안전문화재단, 218명 학부모 홍보대사 위촉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5790>

고, 대구시에서 1명을 추천함

- 이사는 노진철(경북대 교수), 김경민(대구YMCA 사무총장), 민영창(전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장), 강재형(전 대구시의원), 심수택(전 법원 민사조정위원장), 윤석기(지하철 희생자 대책위원장), 윤근(세화산업대표), 전재영(지하철 희생자대책위 사무국장), 박성찬(주주 특장차 대표), 이동우(부상자가족 대표), 감사는 김현익(변호사), 이석도(전 희생자 가족 부위원장) 등이 맡음⁵⁹⁾

○ 경영평가

- 2.18안전문화재단은 지하철 참사 때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 670억 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는 돈 113억 원으로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장학 및 안전 복지사업’, 안전, 방재관련 학술, 연구, 기술지원 사업,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사업,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 등을 펼칠 계획임. 대구시는 안전문화재단에 앞으로 5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힘⁶⁰⁾

59) 한겨레신문. 2016.03.15. 대구지하철 참사 13년만에 안전문화재단 출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033.html#csidx13ba1833ef94497915d69d9c5ff01e0>

60) 한겨레신문. 2016.03.15. 대구지하철 참사 13년만에 안전문화재단 출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033.html#csidx13ba1833ef94497915d69d9c5ff01e0>

제4장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1. 안전문화운동 추진기관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 선행연구 분석으로 본
추진기구 설치·운영 기본방향
3.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여건 및 근거
4.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안)

제4장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1. 안전문화운동 추진기관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⁶¹⁾

가. ‘안전문화진흥’의 시책 추진 발단

○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제시한 필요성

-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66조의2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음(본조 신설 2013년 8월 6일-2014년 2월 발효)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문화활동’(당시의 용어, 현재는 ‘안전문화운동’이 주류)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등임. 이는 2016년 현재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함
- 따라서 이러한 법 제정으로부터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나. 2010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설립을 제안했던 법률(안)

○ 2010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

- 이미 2010년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 제안하였던 안전문화진흥원

61) 본 내용의 <1과 2> 부분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2013년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연구’의 정책과제 중에서 기존연구 내용들에 관한 과거 분석사실들을 수정 게재하였음.

- 설립관련법(안)에서 제36조에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 당시에는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우선 안전문화 추진협의회(제31조)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안전문화 활동의 지원(제32조)을 제안하였음
 - 특히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 등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제36조)을 제안하면서, 이 기관을 재단법인으로 하여 민법상 준용하는 기관으로 추천하였음
 - 경비출연의 경우는 동법 제6항과 제7항에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하였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등의 권리도 규정하였음
 - 주요 안전문화활동으로는 1.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 조사 수집, 2. 안전문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안전문화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4. 안전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인증 및 각종 지원사업, 5. 안전문화와 관련된 국제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이것이 2014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다. 2010년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결과의 제안

- 2010년 당시 기존연구(이종열 외, 2010: 290)에서 제안한 설립법인 유형
 - 당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형태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규정과 개별 법률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보건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안전규정들을 총괄·조정하여 부처별,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을 통합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설립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형태로서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적용받는 것으로 한 바 있었음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법인 (개별법상)

- 설립기관의 지위는 특수법인 중 개별법인 재단설립 특수법인 관련 육성법 및 촉진법, 진흥법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는 법인체를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2010년 제안했던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여 국민생활안전 관리기반의 조성과 안전문화 선진화의 구축, 그리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전문화 활동·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구와 다른 차별성을 지닌 비영리 공공법인격의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이 요구되는 방안으로 연구를 제안하였음

○ 설립법인 설정 이유

- 2010년의 연구에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발의된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을 체질화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안전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전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종열 외, 2010: 290)
- 따라서 정부 및 민간기관과는 구분되는 근거법에 기초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민생활안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바쳐진 재단에 법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재단법인의 형태가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음
- 실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법인으로 설치할 경우 공기업 형태의 법인과 준정부 형태의 법인이 있는데, 준정부부문은 국가로부터 법에 의해 일정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형식임
- 또 특수법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능률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음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조직

- 안전문화진흥원의 조직체계는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 및 연구방향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중점 사업 및 방향은 국민

의 안전교육 훈련계획에 포함될 국민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국민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십형 시민교육프로그램 및 방안,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실행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개정방안 등의 제시가 될 것이라고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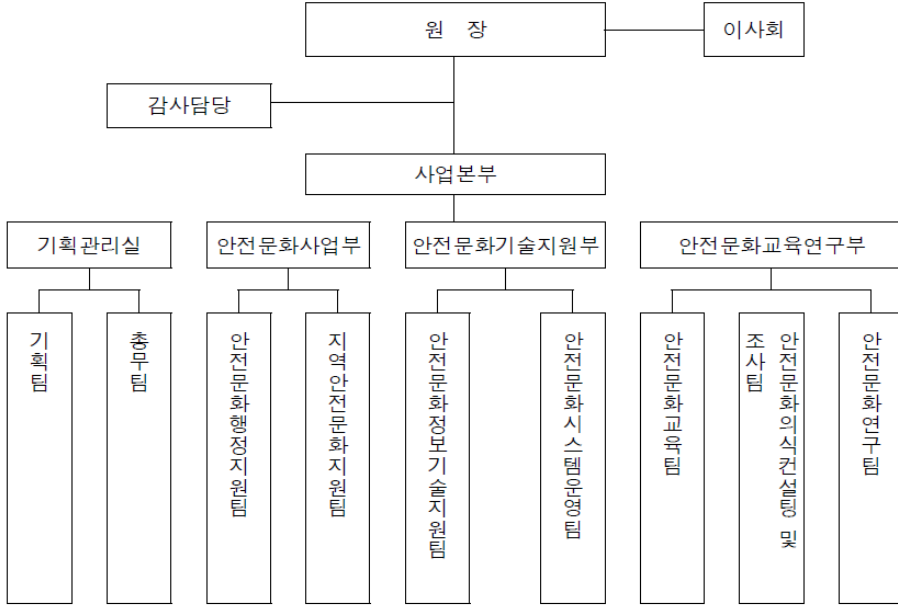
- 그리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사무기구별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진흥원 조직구조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다음 <그림 4-1>의 업무분장표와 같았음(이종열 외, 2010: 291)

<그림 4-1> 안전문화진흥원 업무분장

기획관리	안전문화사업	안전문화기술지원	안전문화교육연구
전략기획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기획 및 조정 - 주요사업 평가 - 주요정책 타외홍보 - [내외] 업무 및 협력관리 - 예산관리 - 서비스 기획 및 고객내역 관리 - 안전인증제도 관리 - 안전인식조사 방안관리 - 탐/홍/정 교육일정 관리 - 주요행사 관리 	상품개발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화 상품 개발 및 보급 - 인공자음 개발 - 교육자료 사업개발 - 보령상품 개발 - 행정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사업 - 안전문화 포털사이트 개발 및 운영 - SIW 발품 및 보급 사업 	정보기술지원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보 연계운영 지원 - 안전문화사업 운영지원 - 자음문화 기술운영 지원 - 안전문화 콘텐츠 연계지원 - 재해정보 연계지원 - 외부협력 기술지원 - 온라인 기술 및 상담 지원 	안전문화 교육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 안전기술 교육 보급 - 콘텐츠 활용방안 개발 - 안전의식 소양교육 - 안전문화체험 교육개발
총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괄 - 조직관리 - 인력관리 - 경리회계 - 기타업무 	운영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운영관리 사업 - 시범마을 지원사업 - 웰치서비스반 안전문화 사업 - 안전문화의식/정보 개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커뮤니티 운영 - 위·무선 전신망 운영지원 - 안전문화 인공자음 운영 - 진흥원 전산실 운영 	교육지원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환경조성 수단 - 안전문화의식 진단평가 - 안전문화 발간업무 - 안전의식 외부 컨설팅 지원
			안전문화 연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화 모델 개발 - 재난예측 모델 연구 - 안전문화 교육 개발 - 안전인증제도 방안 연구 - 지역 안전문화 정책 연구

- 이 조직 형태는 안전문화교육연구 분야의 확충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 활용방안을 개발토록 함, 또한 안전문화 향상 프로그램 및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문화 교육개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중앙부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 안전분야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안전정책 수립을 통한 지원 참모조직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었음

<그림 4-2> 이종열 외(2010) 연구팀이 제안한 안전문화진흥원 조직도



(이종열 외, 2010: 293)

○ 안전문화진흥원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이종열(2010)의 연구에서는 (가칭)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안전문화진흥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추진기획단은 안전문화정책의 소통·합의 창구 역할로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신뢰 및 공식성을 전제로 재단의 사업방식, 역할 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실무준비 기획단을 조직하여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음

라. 2012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설립에 관한 연구결과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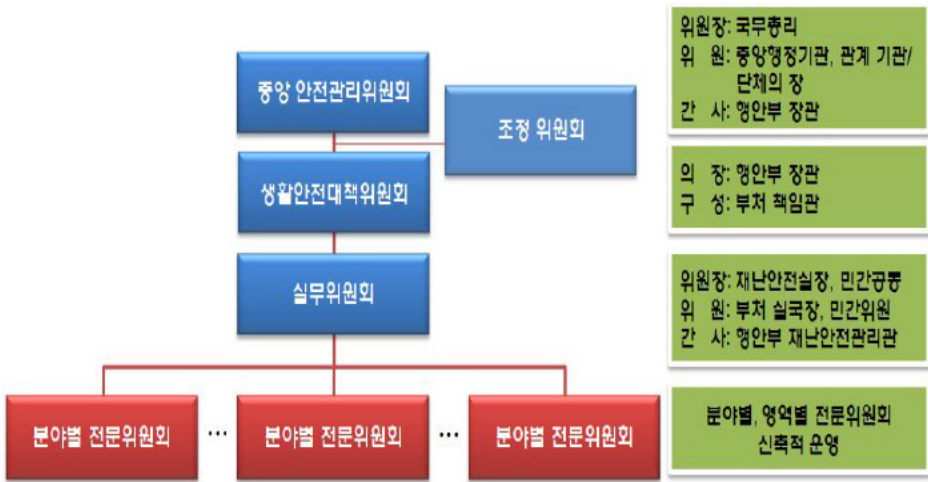
○ 설립 방안 (김근영, 2012: 158 이하)

- 제1안은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범주 안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했음

- 즉,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의 생활안전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문화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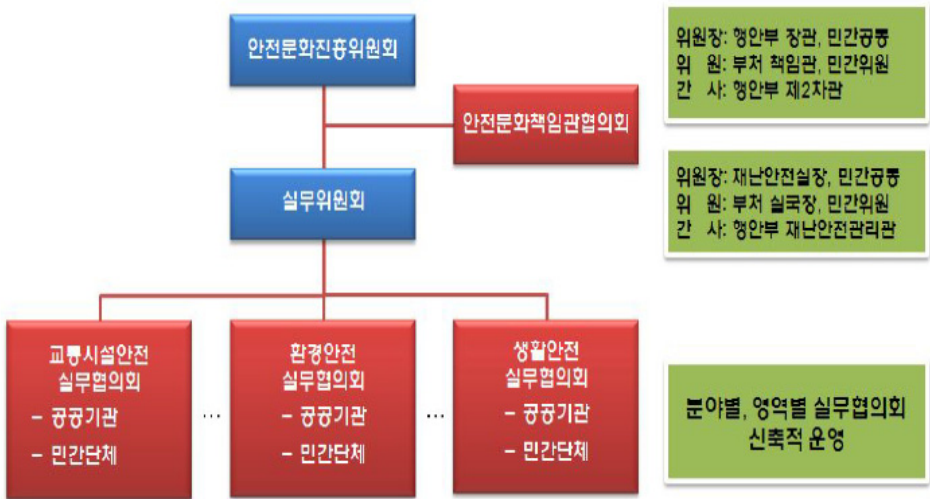
<그림 4-3> 2012년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문화진흥원 구성도



- 제2안은 제1안에서 모든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즉,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안을 했음
- 제3안은 민간학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안전문화진흥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 위원회의 소속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로 하고, 주된 역할은 안전문화 관련 부처 간 상호 협력적 정책 추진을 촉진하며, 안전문화 시행계획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도록 권고하였음
- 일본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사례처럼 상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정립하고,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한 소관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을 전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었음

- 구체적으로 (가칭)안전문화진흥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안전문화 정책 총괄 기능의 강화(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심의, 1년 단위 시행계획 심의, 부처 간 중복 정책 등의 합리적 조율), 안전문화 유관 영역 간 정책의 공조(안전교육·훈련,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정책 홍보 영역과의 수평적 정책협력 등),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문화 진흥사업 투자의 효율화 제고 그리고 안전문화 관련 주요 시책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었음

<그림 4-4> 안전문화진흥위원회 조직도



마. 요약: 재단의 지위와 설립 목적

○ 유사기관의 공통점: 재단법인의 지위

- 이상 기존연구 결과와 다른 국내 유사 공공진흥원 등의 설립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이들은 대부분 공공법인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음(이종열 외, 2010: 241~242)
- 일반적으로 재단이라 함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 목적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전반의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화·조직화·제도화 된 자선을 실행하는 기관임

- 재단은 독립적인 기금과 이사회의 구성된 독립된 기구의 형태를 띠며, 해당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비정부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임

○ 재단의 설립 목적

- ① 공공업무의 효율화의 필요성: 재단의 첫 번째 설립목적은 주민영화의 수단(semi-privatization), 즉 공공적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임. 다시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식적인 행정 체계 내에서 수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의심되는 임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가 재단임
- 안전문화 지원이나 재난정책의 경우 재난 및 안전의 관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철학, 비전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체계 내에서 안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 ② 민간협력과 자원동원의 필요성: 재단을 설립하는 두 번째 목적은 공공의 목적달성에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 및 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임. 따라서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고 민간의 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 협력기구를 설립, 다각적인 민간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③ 공공적인 업무 수행의 필요성: 재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자기가 아닌, 자기 이외의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non-profit), 비정부(non-government) 기구임
- 즉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재단을 설립, 특정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적인 업무 수행 및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임

2. 선행연구 분석으로 본 추진기구 설치·운영 기본방향

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의 설립 유형 검토

○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의 설립 유형 선택안

-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처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상설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법령의 당위성이나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할 시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상에서는 이러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국회를 통과한 법이 되었음

○ 설립형태

- 비영리 법인은 국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의하여 직접 경영할 것인가 또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할 것인가는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설립 특징을 지니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근거 법률인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 법인으로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의 설립이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형태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안전문화(진흥)재단/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도 근거하여 국민 생활안전 관리기반의 조성과 안전문화 선진화의 구축, 그리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활동·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구와 다른 차별성을 지닌 비영리 공공법인격으로서의 안전문화(진흥)재단/진흥원 설립이 요구됨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할 타당성

-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립이 되는 일반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이므로, 비영리 법인은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모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성립함
-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래 목적의 반하지 않는 범위내의 영리행위는 인정되므로,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의도적·계획적 이윤추구를 하지 않고,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도 없음. 비영리 사업에 대한 원가 회수 의사없이 일방적인 소비 지출을 하며,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근간으로 함
-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첫째,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 추구를 하지 않으며, 둘째,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으며, 셋째,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지출을 하며, 넷째,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하고, 다섯째,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받는 등의 특징을 지님

<표 4-1>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의 차이

구별요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소유 주체	민법(개별법, 특별법)상 법인이 주체	사원(총회) 등 최고의사결정체
이익배당	× 법인에 귀속	○ 사원, 주주, 출자자
목적사업	비영리사업	영리사업
수익사업범위	성립목적에 위배되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에 의거	제한없음
잔여재산처분	×	○
정부지원(보조금 등)	○ 법적 근거에 따라	×
세제지원	○	×

- 사단법인의 경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의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법인이며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 요건을 구비하여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짐. 사단법인은 인적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 할 수 있음
- 특별법으로 성립된 재단법인의 경우
 -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인 특수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등과 같이 일반법이 아닌 특정한 개별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도 가능함
- 특수법인 중 ‘특정한 개별법’ 그중에서도 ‘육성법’ ‘촉진법’상의 법인
 -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법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은 ① 개별 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② 육성법, 촉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됨
 - ①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구)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구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재단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등조합 등이 있음
 -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행정자치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은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등 다양함
 - ② 육성법 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1. 특정연구기관 육

성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구)인삼연초연구소가 있음. ②-2. 기타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는 산업기술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있음. ②-3. 촉진법, 진흥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는 농지개발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등이 있음

- ③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수가 있음

○ 특수법인 중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법인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경우와 정부와 사인(私人)이 공동 출자한 법인의 경우가 있고, 특수법인의 설립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므로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은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됨
-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더욱 필요함
-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입법취지, 목적, 예산의 지원여부, 업무의 공공성(위탁 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특수법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의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정되며 기관 및 구성원에 관하여 국

가가 참가하고 해산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조세면제의 특전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특수법인은 민법상의 재단, 사단과는 달리 쟁송형태가 행정소송이고, 징수절차로 민사소송법에 직접 규율되지 않으며, 공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됨
- 특수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은 보통 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제약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기 위함임
- 현대사회의 복리행정의 확대에 의한 사회복지제도의 실시, 급부행정으로서의 국가기업의 증대, 지역재개발사업의 실시 등의 요구가 특수법인에 기대할 수 있는 능률적 경영의 요구와 합치되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수행 기능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상 법적 근거 마련

- 재난안전기본법 상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79조의2 등에 근거하여 안전문화운동 총괄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시행령상의 근거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표 4-2> 재난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재난안전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p>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p> <p>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22.></p> <p>1. 국공립 연구기관</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p>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p> <p>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p>	<p>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p>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관리 등)</p>	<p>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p> <p>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 사업비의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재난안전기본법 제71조에 근거할 수 있으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14조와(위 참조), 제20조 등임

<표 4-3> 재난안전기본법 제71조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p>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p> <p>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p>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p> <p>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2010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한 소요비용 추계
-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안전문화(진흥)재단/진흥원이 설립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13억 3,400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73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표 4-4> 원유철의원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인건비	1,200	1,262	1,333	1,400	1,470	6,665
경상경비	134	138	142	146	150	710
합 계	1,334	1,400	1,475	1,546	1,620	7,3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례 (이종열 외, 2010)

- 국가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를 연구하여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비용 추정
-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1) 관련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며, (2) 사업영역이 공공 및 민간 영역을 포함한 국가전체이며, (3)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 중 정보문화 진흥사업은 안전문화진흥원의 안전문화 진흥과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때문임

○ 설립비용의 추정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무부처(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건비 전액과 경상운영비의 50% 정도를 출연금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본 추계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안전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구성한다고 가정함
- 진흥원의 인력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에 비례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정보문화진흥과 안전문화진흥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안전문화진흥과 관련한 출연금의 규모는 정보문화진흥관련 출연금의 규모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사업비에서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세부사업 규모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적용하여 구함

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의 운영 방향

○ 기본방향으로 분산된 안전문화 기능 사업의 통합체 구성 필요

-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수준의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타부처 산하의 재난 및 안전유관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배치 부분을 담당·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부처 간 산재되어 있는 안전문화 업무의 통합 조정을 위한 기구로 국민안전처에 (가칭)안전문화문위원회를 두어 향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사업운영체의 독립성 보장으로 사업활동성 보장

- 현재 안전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독립 기관화된 국가 차원의 안전문화를 추구하는 법정 전담기구로서 사업성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의식 연구, 연수, 정보제공, 기술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전관련 공무원 및 일반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 이러한 독립기관을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육성 발전과 안전문화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안전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책사업 집행기능과 정책개발 지원 기능의 균형

- 연구원과 행정직(전문원)의 균형 있는 조직 구성으로 정책개발 지원 기능과 정책사업의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킴
-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간 공동협력 방안 도출하고, 안전문화 구축과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과의 투자 중복 방지를 도모함, 이러한 안전문화 정책사업 집행 기능과 지원 기능의 균형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보급을 위한 대 국민홍보 및 교육을 담당토록 함

○ 시민의 안전문화 학습기회 확충과 서비스의 질 향상

- 안전문화 연구와 실천 전문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기관의 전문화를 추진함.

행정의 핵심에는 시민의 만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안전문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일반시민의 안전문화학습 기회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업무 추진을 통해 안전의식의 제고와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및 안전문화 선진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함
-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의 증가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등이 필요함
- 초등학교에서의 재난교육을 정규교과 과정화 하고, 재난안전 체험시설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함
-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통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국내 재난안전체험시설 및 모든 안전문화운동을 총괄 및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함

○ 네트워크 체계 마련과 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기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연계 강화에 기여하고 상호 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수준의 안전문화추진 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함.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총체적인 면에서 안전문화 진흥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교육 및 업무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재난 안전 업무와 지원 기능 부처별 경계 넘기를 통해 전 부처의 안전문화 전문성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과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수준의 주체 간 역할 분담을 적정화하도록 함. 또한 전국국가적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사업 발굴, 컨설팅 등 전문적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함

3.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여건 및 근거

가. 경북 안전문화운동 현황

○ 경상북도의 재난안전운동 및 관련 교육훈련 현황

- 경북은 2016년 ‘2016년 재난안전 교육훈련 종합계획’에 따라서 교육 인원을 총 12만 명으로 확정하고 경북 도내의 민간단체, 복지시설, 어린이시설 등에 따라서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경상매일신문 2016년 7월)
- 총 31개 교육과정으로, 경북은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 ‘동절기 안전 취약 계층 안전교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찾아가는 도민 참가 교육’ ‘원자력 방사능 방재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산불 예방교육’ 등 실·국별로 하는 재난 안전교육을 하나로 묶어 모두 31개 과정을 마련하였음
- 매뉴얼 뿐만 아니라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자연재난인 해빙기 풍수해, 한파, 폭염 등 대처 행동요령 48개와 전염병,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대처법, 심폐소생술 등 111개의 사고 대처법’ 등을 전파하고 있음
- ‘생애 주기별 맞춤형교육’을 위해서 경북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북 안전기동대 정예화 교육’, 3분의 기적을 만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일찍부터 안전의식을 기르기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 등 이색 프로그램도 추진 중임

○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현황

- 지역안전 공동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하는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는 그 구성원들이 의사·간호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재난구조단, 대한산악연맹, 해병전우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1만3천232명, 그리고 경상북도새마을회 16만4천 명,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39만5천88명 등 모두 67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경상매일신문 2016년 7월)
- 이들의 활동 도구는 주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이용한 주민생활에서의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 재난현장에서의 지원활동 등 다양함
- 시군 단위에서의 ‘경북 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22일 전국 최초로 결성

된 민간단체로서, 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도내 23개 시·군 20~60세 남녀 125명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음

○ 예방활동 인력

- 경북은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민간인력 3만6천500명을 확보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⁶²⁾ 동시에 2017년부터는 ‘도민 안심 SNS’도 운영하고 있음
- 그간의 실적으로 보면, 2014년 2월 동해안 4개 시·군(포항·경주·울진·영덕) 폭설 현장, 같은 해 8월 부산 기장군 수해 현장, 2015년 3월 경주 산불 현장과 9월 영천 페가스 누출사고 때 출동해 현장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음

○ 안전경북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교육 훈련 사항들⁶³⁾

- 위에서 제시한 안전교육 이외에도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에 대비한 안전구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승강기 갑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 등을 실시하며,
- 도내에 위치한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행동요령 등의 교육 등도 실시함(공무원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교육, 도민 현장견학 및 안전체험학습 등)

나. 경북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의 설립 필요성 및 설립 근거

○ 중앙정부의 안전문화운동의 기본방향

- 정부는 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
- 즉, 2014년부터 ‘생활안전지도’를 작성하여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동네 안전정보 제공”도 이행하고 있음
- 생활 속의 재난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

62) 안전관련 단체 4천990명, 자율방재단 4천959명, 이·통장 7천878명, 주민신고망 1만8천673명 등 모두 3만6천500명임(경상매일신문 2016년 7월).

63) 참고: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2016 안전교육·훈련 종합계획, 2016.

는 국민안전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안전신문고 인터넷 서비스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 주민자치회 중심의 안전마을 만들기(23개 마을), 지역단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 참여와 자치단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안전관리 개선 등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⁶⁴⁾

○ 2016년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근거

- 이 법은 2017년 5월 발효되는 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여기서 정한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으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5조).
- 그리고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 정책 평가·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해야 함(제9조)
-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이와 같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에 관한 의무사항들이 바로 안전문화(진흥)재단 및 안전문화진흥원 등이 설치 운영 되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기능 분야인 것임

○ 안전문화운동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추진주체 등 기반마련이 시급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분석한 안전문화운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부족한 안전교육 인프라와 추진체계 등을 구축할

64) 국민안전처(2016년 1월), 2016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중에서.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상북도 역시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맞춰 도민의 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역량을 높여줄 맞춤형·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 인프라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가칭)안전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확보 및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함

○ 실무적으로 경북이 추진하는 ‘생활안전교육’의 내용

- 주민 중에서도 재난안전 취약 계층들인 노인대상 산불·농기계·교통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동절기의 경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 요령에 관해서도 도민,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및 농업기술원 자체교육 시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음
- 더불어 경북도 내에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안전체험시설 등의 확충 전파가 필요한 상황임⁶⁵⁾

○ 안전경북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 경북의 안전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함은 물론이고 경북 도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는 바로 이 ‘재난안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상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 보급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5) 전국적 상황을 보면, 학령인구수(3-7세, 약 752만명) 대비 체험시설 부족으로 체험안전교육 사각지대 발생, 안전체험시설 현황(‘15.10 기준): 전국 164개소, 추가 건립 예정 9개소 등임.

<표 4-5>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경북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의 주요 활동분야 및 핵심 기능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 시 역할(대상사업)을 제시한 근거법령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16년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취지 및 동법의 제4조 이하 13조까지, 그리고 제14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필요한 연구 및 개발 보급 등을 이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게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을 명문화 하여 그 사무수행을 규정하고 있음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의 활동 기본방향
 - 현 상황에서 재난안전사고가 점차 도민생활 가까이서도 대형화·복합화 되어감에 따라서 항상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안전 대책 및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만으로는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중심의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 등 범도민적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 축이 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

-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적 행정단위(경상북도 전 범위)를 기반으로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연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전반적 역할을 주도하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경북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및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들 간의 협업체계 및 도 행정단위의 시군은 물론 타 시·도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중·장·단기의 재난대비 신속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연구와 기획 기능 등을 갖춘 기관 필요
 -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황 점검과 운영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지역의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기술적 안전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안전산업 분야의 시장성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화,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연관 기능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그리고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빨리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 ‘안전마을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한 안전관리의 강화(자율적 선제적 안전점검, 신고 및 모니터링의 실효적 운영) 및 안전문화의 확산과 같은 안전문화운동 기반의 지역적 착근이 완료되도록 정책적·실무적인 유도가 가능한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정리: 안전문화재단(가칭)의 설립·운영 시 주요 기능
-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정책의 주관기관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
 - 재난안전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주요시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역할 수행
 - 재난안전 분야의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및 양성교육 시행
 - 재난안전에 대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체계 모니터링

- 재난안전 분야의 산업화 방안 연구 및 기술적 발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추진체계 역할

라. 경북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요인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률 제6조와 제7조), 경북도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립 타당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특히 동법 제2조에서 정부(행정자치부장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가능함
 - 단,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대상사업으로는 동법 제4조에서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검토요인을 보면,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임
-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의 사전협의 시 내용
 - 기관설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한 대상은 출자금 5억원, 출연금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기관으로, 그 시기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 전 요청을 해야 함

－ 사전협의 시 논의 내용: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내용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7.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등임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요인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 4-6>
과 같음

<표 4-6> 경북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요인

검토 요인	적정성 검토 사항
사업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 (민간 경영참여 곤란성,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 환경훼손 여부 등)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고려사항별 분석결과에 대한 적정성
	기업성 기준(경상수지 5할 이상 여부) 적합성 및 그 산출근거
	유사중복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
재원마련 방안 및 사업별 수지분석	경북도청의 일반예산에서 지원 가능한 재정지출 방안 검토 향후 5년간 수익 흐름 추정 및 분석의 필요
조직·인력운영	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충족여부 등
주민복리증진	기관 신설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의 충족 여부 등
적정자본금 분석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근거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 (수익·처분가능성, 행정재산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기관 신설에 따른 출연 및 예산지원규모의 적정성
	향후 수진분석을 토한 지방재정 건전화 저해 관계 등

4.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안)

가.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사업운영의 적정성 검토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에 따른 역할의 공공성과 지속성 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분야의 책임을 맡은 기능들은 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의 분야를 어떻게 범주화하여 그 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주민안전 도모를 위한 안전 사각지대의 발견 및 해소, 경북도청이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통합·조정 역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공적 기능들은 민간부문에서 주도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상업적 경영참여 등이 곤란하기 때문임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의 주요 사업
 -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보급 및 확대에 관련한 재난안전 정책을 경북도에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북의 안전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함
 - 재단의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인구계층별로 구분하여 영유아 및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개인의 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별 안전교육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는 기능들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지도와 같은 업무들을 전담하는 부서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분야 및 기관별로 해당되는 안전교육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안전홍보정책 등의 실효성 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 경북도내에서의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각급 학교 등 안전교육의 확산 및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도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내용을 궁극적으로는 민방위대 교육커리큘럼 내실화 및 실전체험형 민

방위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기구의 역할이 중요

- 경북도의 주민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능도 중요함. 이를 위해서 경북도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전수하고 관련 학습자료의 개발·수집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관내 시군 및 타 시도와의 통합DB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관리 체제도 유지해야 함
 - 특히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도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의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분야별 안전교육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는 기관이 필요함
 - 또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산업화 및 사업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함. 예를 들면, 민간기업과 안전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주요과제들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안이 있으며, 이미 ‘학생 공부방 대상 안전교육’ 사례로 “포스코에너지(안전시설 개선투자, 봉사 인력)+한국화재보험협회(전문강사, 교재 지원)” 등이 있음
- 중앙정부가 추진을 권고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아래 <표 4-7>과 같음⁶⁶⁾

<표 4-7>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체험 유형	체험 내용	관련기관
안전인형극	어린이안전사고예방 인형극(신변·생활안전)	전문극단
가정·재난안전체험	가정 내 안전사고 및 재난(지진, 화재) 안전 체험	
신변안전체험	유괴, 성폭력 등 내 몸의 소중함에 대한 체험	
교통안전체험	안전띠체험, 통학버스 승하차 체험, 광각후사경체험	
자전거안전체험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 및 올바른 자전거타기 체험	
비상대비 체험	비상구 찾기, 안보영상 상영, 방독면 체험	
승강기안전체험	승강기 안전하게 이용하기 및 사고발생시 체험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66) 국민안전처(2015), 2015년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 중에서.

체험 유형	체험 내용	관련기관
가스안전체험	가스누출점검체험,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안전한 사용	한국가스 안전공사
전기안전체험	안전한 전기 사용 방법 습득 및 체험	한국전기 안전공사
소방안전체험	화재 시 비상탈출 체험, 연기체험, 완강기체험 등	시도소방본부
물소화기체험	화재발생시 소화기체험	소방서
심폐소생술 체험	응급구조 심폐소생술 체험	소방서
식품안전 체험	식중독 예방, 올바른 식품 선택 방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교통안전문화체험	횡단보도 건너기와 안전띠, 카시트착용 홍보	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 체험	안전 다짐, 보호구 착용 체험	안전보건공단
구멍조끼착용 체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구멍조끼착용 체험	
안전통장만들기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들에게 안전통장만들기 체험	IBK기업은행
안전우산만들기	체험 후 느낌을 투명우산에 그려 나만의 우산만들기	
실종아동 등 예방사전등록제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 정보 사전 등록	경찰청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나.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 경북도청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 안전 등에 관한 예산규모 현황

- 2015년 경북도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를 총액으로 하는 예산규모는 총 7조 3천억원(2014년도 예산총액 6조 9천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조 2,800억원, 특별회계는 1조를 약간 넘고 있음
- 경북도청의 세출 총액으로 분석해 볼 때, 2015년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7조 9,700억원을 기록된 가운데, 재난방재 및 민방위를 포함한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지출총액은 약 1,890억으로 전체 지출의 약 2.58%를 기록하고 있음.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1,120억원(1.53%), 소방에 약 776억원(1.06%)을 지출한 바 있음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재정지원 방안 검토

- 경북의 안전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청의 세출 분야에서 ‘소방’을 제외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의 1,120억 총 지출예산의

- 일부를 사업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안전문화 교육 및 캠페인에 기초한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수익의 흐름에 관해서 세부적인 추정 및 분석이 요구됨
- 최초 출연금으로 200억원 (출연금)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기관설립 및 운영재원을 마련하게 한 후, 향후 자체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기관재정의 자립 단계에까지 매년 운영비 20억원 정도를 경북도에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초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안으로 교육(050 예산항목)과 문화 및 관광(060 예산항목), 그리고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090), 산업·중소기업(110) 등의 예산항목으로부터 부분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대응예방과 같이 사업운영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연계 또는 대행사업으로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대행업무로 추진시키도록 할 수 있음

<표 4-8> 경북도의 안전교육과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⁶⁷⁾

(단위: 천원)

구분	교육과정	2015 사업비	2016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계	교육훈련 워크숍 등 (31개 과정)	1,745,400	2,325,469	395,808	1,558,761	2015,400	165,500	안전정책과
교육 (18)	소계	1,121,400	1,570,869	259,308	1,050,061	162,000	99,500	비상대비과, 생활안전과 등
훈련 (5개)	소계	374,000	326,000	136,500	146,100	43,400		안전정책과, 생활안전과, 비상대비과
포럼 워크숍 (5개)	소계	112,000	177,000		177,000			안전정책과
기타 (3개)	소계	138,000	251,600		185,600		66,000	안전정책과

67)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2016 안전교육·훈련 종합계획, 2016, p.12.

- 이외에도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연간 사업비 지원비용으로는 우선적으로 경북도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합하여 연간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총액은 약 18억 수준임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이 수행할 대행사업 등의 예산지원 범위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7조에 근거하면,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재정운영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관이 대행하게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그 지원 범위는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등에 한정하고 있음

다.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조직과 인력 운영안
 - 재단의 조직·인력운영의 적절성 검토는 초기 설립시에는 일단 조직구성(안)을 검토하여 초기인력의 소요범위를 정하게 되지만, 사업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서 또 운영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증가하게 됨
 - 이미 앞 장의 ‘경상북도 내 재단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현황 비교’에서 경북도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과 인력규모는 검토한 바 있음
- 타 시도의 출자출연기관 사례: 경기도의 주요 출자·출연기관 인력현황은 아래 <표 4-9>과 같음

<표 4-9> 경기도의 2015년 기준 주요분야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현황

구 분	기관명	조직 및 인력현황(2015)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1역, 2본부, 1단, 13팀(4지소) 정원 74명 / 현원 63명 / 비정규직 38명 남성 57.4%(58명), 여성 42.6%(43명)
	경기문화재단	4본부 20부서(10실·팀, 6관, 3센터, 1원) 정원 191명 / 현원 169명 / 비정규직 179명 남성 53.2%(184명), 여성 46.8%(162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본부 1센터 18팀 1실 정원 99명 / 현원 92명 / 비정규직 25명 남성 59%(73명), 여성 41%(51명)
	경기복지재단	3실 8팀 정원 34명 / 현원 34명 / 비정규직 25명 남성 36%(21명), 여성 64%(38명)
	경기평생교육진흥원	5실 1센터 정원 30명 / 현원 29명 / 비정규직 8명 남성 43.2%(16명), 여성 56.8%(21명)

- 경기도의 경우 분야별로 경제분야, 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복지분야, 교육체육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들은 정규직 70% 및 비정규직이 30% 수준이고, 남녀의 비율에서 남성이 주로 우위에 있으며 교육과 문화분야의 재단들 인력이 평균 70명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기본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표준정원제가 적용되어 왔고, 이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정해서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제도였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같다고 해도 기구증설, 상위직급의 책정 등으로 조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이를 총액인건비의 기준으로 관리하여 왔음
- 이후 2014년부터 총액인건비제에 기초한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는데, 재정력 여건에 따라서 1~3% 범위 내에서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증원을 승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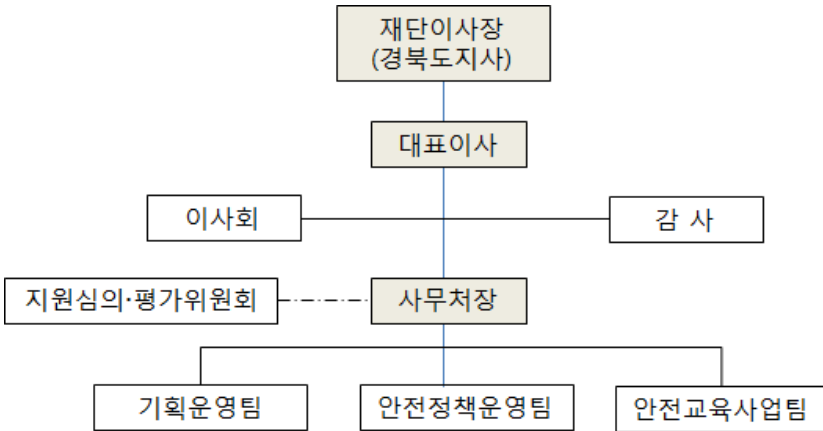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조직 구성(안)

- 따라서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이 설립 운영될 경우 약 20명의 인력으로

조직이 출범하면, 기준인건비제의 정원관리 방식을 고려해 볼 때, 경북도는 그 재정력이 ‘중’ 수준의 그룹에 속하므로 2% 수준에서의 인력확대 타당성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장 시도의 기구 중에서 제9~11조 근거에 따라 ‘시도의 기구설치 기준’ 및 ‘시도의 실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도 고려해서 인력 구성을 해야 할 것임

- 출범조직은 1차 3개 부서(팀)의 규모로, 15~20명 수준의 인력이 적정함

<그림 4-5> 출범 조직(안)



- 아래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도내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초기 인력은 주로 15명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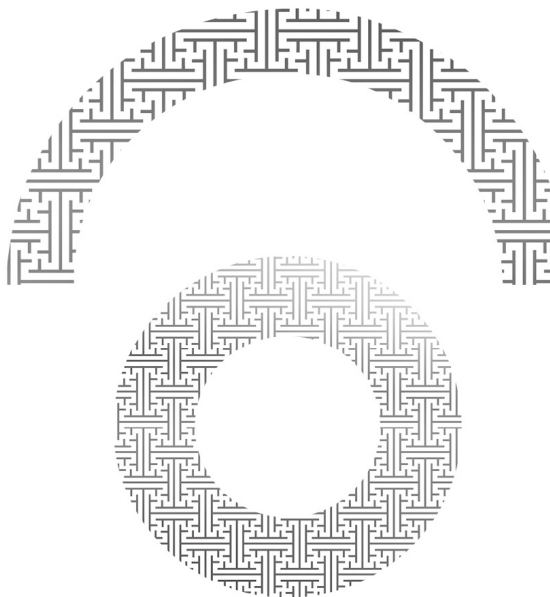
<표 4-10> 경북도내 기관 인력 비교

구분	한국국학 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재단법인 문화 엑스포	재단법인 한국정신 문화재단	재단법인 청송문화 관광재단	재단법인 구미오성 문화재단	재단법인 청도우리 문화재단
설립년도	1995	2011	1998	1996	2014	2013	2001	2012
설립출범 인원	34명	15명	6명	-	9명	10명	13명	15명
현재인원	53명	20명	55명	28명	9명	10명	12명	15명

제5장

결 론

1.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2.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근거 및 핵심기능
3. 경북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제5장

결 론

1.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필요성

- 정부는 2016년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법 효력은 2017년 5월부터이며, 법 제정 목적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을 통해서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는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해야 함(법 제9조)
 - 특히 학교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강조하고 있음(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이와 같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교육에 관한 의무사항들이 바로 안전문화(진흥)재단 및 안전문화진흥원 등이 설치 운영되면 수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
- 경북이 추진하는 ‘생활안전교육’ 등 안전대응정책
 - 경북은 재난안전 취약 계층들인 노인대상 산불·농기계·교통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방학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동절기의 경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 요령에 관해서도 도민, 단체, 학교 등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찾아가는 도민참여교육 및 농업기술원 자체교육 시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음

- 더불어 경북도 내에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안전체험시설 등의 확충 전파가 필요한 상황임. 전국적 상황을 보면, 학령인구수(3-7세, 약 752만명) 대비 체험시설 부족으로 체험안전교육 사각지대 발생, 안전체험시설 현황(‘15.10 기준)은 전국 164개소, 추가 건립 예정 9개소 등임
- 따라서 경북도청은 지역의 안전문화운동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한 확고한 추진주체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함
 - 특히 경상북도는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맞춰 도민의 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역량을 높여줄 맞춤형·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 인프라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가칭)안전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확보 및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함
 - 또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없는 조직적 컨트롤 타워 등 부족한 안전교육 인프라와 추진체계 등을 구축·운영할 시급성이 요구됨

2.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근거 및 핵심기능

- 안전경북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 경북의 안전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함은 물론이고 경북도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할 수 있음
 - 또한 ‘재난안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상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 보급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됨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 설립 시 역할(대상사업)을 제시한 근거법령
 - 2016년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취지 및 동법의 제4조

이하 13조까지, 그리고 제14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필요한 연구 및 개발 보급 등을 이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게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을 명문화 하여 그 사무수행을 규정하고 있음

○ 경북 안전문화재단(가칭)의 활동 기본방향

- 현 상황에서 재난안전사고가 점차 도민생활 가까이서도 대형화·복합화 되어감에 따라서 항상 중앙정부 주도의 재난안전 대책 및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식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만으로는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중심의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 등 범도민적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 축이 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
-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적 행정단위(경상북도 전 범위)를 기반으로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연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전반적 역할을 주도하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경북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및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들 간의 협업체계 및 도 행정단위의 시군은 물론 타 시·도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중·장·단기의 재난대비 신속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연구와 기획 기능 등을 갖춘 기관 필요
-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황 점검과 운영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지역의 재난안전 및 생활안전, 기술적 안전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안전산업 분야의 시장성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화,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연관 기능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그리고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빨리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 ‘안전마을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한 안전관리의 강화

(자율적 선제적 안전점검, 신고 및 모니터링의 실효적 운영) 및 안전문화의 확산과 같은 안전문화운동 기반의 지역적 착근이 완료되도록 정책적·실무적인 유도가 가능한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정리: 안전문화재단(가칭)의 설립·운영 시 주요 기능
 -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정책의 주관기관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
 - 재난안전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주요시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역할 수행
 - 재난안전 분야의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및 양성교육 시행
 - 재난안전에 대비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체계 모니터링
 - 재난안전 분야의 산업화 방안 연구 및 기술적 발전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추진체계 역할

3. 경북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과 운영시 세부적인 사전·사후 준비사항
 - 먼저 기관 신설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의 충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북도내의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전분석과 운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중간분석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수정 및 개선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재단의 지속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1년 및 중장기의 적정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중간분석도 필요하며, 차후로 민간부문과의 협력 또는 지분출자를 유도할 경우 적정한 지분 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립 준비가 필요함
 - 경북도청의 재정건전성 여건에 따른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성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와 향후 사업의 수지분석을 거쳐서

경북도의 재정 건전화를 저해하는 돌발적인 요인 발생이 없는지 등 사전 재정위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도 절대적으로 필요함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중앙재원을 찾아서 지원받도록 하고, 그 지원 유형도 다각화 다양화 필요
 - 국민안전처의 2016년 예산 현황을 보면,⁶⁸⁾ 그 중점투자 분야의 경우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 어린이 안전CCTV 설치 346억,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에 230억 등 총 8,193억을 지출하고,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 확대에 9,287억 등 총 지출 3조2,114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음. 이중에 주요 사업비로는 110개 사업에 대하여 2조 4,350억원을 소요하도록 하였음
 - 국민안전처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이 수행할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명목으로 기본적으로 3~5년 간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부를 지원받아서 자립적 상황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명목으로는 2016년 예산에 따르면,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지원 확대에 총 9,287억을 사용하고 있고, 이 재원들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140억과 ‘소방안전교부세’ 4,147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간접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재원조달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를 반영하도록 했으나, 국회 감사에 따르면, 그 배분지표들로는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및 투자소요(40%)의 안전분야 교부액 지표로 지방도 위험률(7%), 지방하천 위험도(4%), 공유림 위험도(4%), 안전지수(5%)를 설정

68) https://www.mps.go.kr/home/policy/workReport/infoGraphic2016_5/ (2017년 2월 검색)

했는데, 지방하천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유림 위험도 등은 현재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중복지원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음(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 따라서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에서도 중복적 투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앙정부의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운영할 때, 매칭펀드를 기본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의 하나로 지원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경북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교부세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행정자치부와 경북 도청 간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로부터의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청주시의 신청사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500억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듯이 비록 정치적 영향 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북도 내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에 의한 재정지원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임
- 경북 안전문화(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시 법률적 검토사항
- 법률적 검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법령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사업비 부담 범위 확정(동 조례 제7조),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 및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동 조례 제6조 및 제10조), 지도·감독(동 조례 제8조)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운영에 적용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경북도의회(2015), 경북도 2015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별 운영 홈페이지
- 경상북도(2016), 2016 안전교육·훈련 종합계획
- 경상북도(2016), 2016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경상북도(2016), ‘2016년 재난안전 교육훈련 종합계획’
- 국민안전처(2016), 「2016년 하반기 안문협 총회 및 안전포럼」
- 국민안전처(2016), 2016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 국민안전처(2015), 국민안전처 주요 통계, 2015년 2월.
- 국민안전처(2015), 국민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2015년 1월 18일
- 국민안전처(2015),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 2015년 2월 9일, 안전정책실/안전문화교육과
- 국민안전처(2015),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지원,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2014), 재난관리체계 II: 한눈에 보기.
- 김광석(2012),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김근영(2012),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김승완(2011), 자원으로서는 네트워크가 환경 NGO 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9(4), p.279-304.
- 김준기·이민호(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 44(1), p.91-126.
- 동국대산학협력단(2012),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소방방재청, 2012년 9월, 연구용역보고서.
- 류상일(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동권 61호), p.53~70.
- 박석희 외,(2004)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행정논총」, 42(1), p.103-132.

- 배귀희·임승후(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한탄강댐 사례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주요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4), p.107-144.
- 소방방재청(2011),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지침”
- 안영훈(2014), 범부처 통합형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연구, 정책연구, 통권182호
- 안영훈(2013),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영훈(2010), 우리나라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2010년 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안영훈(200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안행부,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보고대회 가제”(2013-10-16)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안행부,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보고대회 가제”(2013-10-16)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시도 안문현 민간위원장 간담회(2013-11-04)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심폐소생술 직장교육 실시(2013-08-13)
- 안전행정부(2013), 안전문화 우수사례집
- 안전행정부(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통권 제15호
- 안전행정부(2013),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내부문서.
- 안철현(2011),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지침 개발, 소방방재청
- 어기구 외(2010), “안전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http://oshri.kosha.or.kr/board>)
- 오장근(2009), 효문화진흥원 설치를 위한 소론 - 효문화진흥원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효학연구, 04/30/2009, Vol. 9, p. 83-107; 한국효학회
- 이종열(2011), “안전지수 개발 및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 정준석(2008),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현황 및 역향에 대하여”, 한국공학교육학회(구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공학교육> 15권3호 (2008), pp.77-79
- 행정안전부 안전책임관 워크숍(CSO) 개최(10.2) 발표자료(2013-10-07)
- 행정안전부, 2010~2013 행정안전백서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2016)